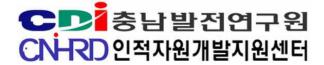
환경피해극복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전략 모색

[서해안 인재육성을 통한 희망찾기 및 지역공동체 복원]

최진하, 최병학 외



제	1	장 서본 "	•••••	•••••	•••••	3
	2.	연구의 목적 …				4
제			법			
	2.	연구 설계		•••••		7
	3.	분석 도구		•••••		13
제	3	장 재난관	견 문헌검토 ···········	•••••	••••••	14
	1.	재난관리 법적	체계			14
	2.	재난관리체계 ·				20
	3.	재난관리 복지	체계			24
	4.	피해지역주민의	의 복지 욕 구			27
제	4	장 우리나	라 복지서비스 현황		••••••	29
	1.	경제지원서비스	스			29
	2.	직업재활서비스	스			41
	3.	의료지원서비스	<u> </u>			45
	4.	심리지원서비스	스			49
	5.	교육복지서비스	스			56

제	5 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사고지역 현황	65
	1. 피해지역 지원 현황	65
	2. 사회경제적 현황	73
	3. 복지기관 현황	· 108
	4. 교육기관 현황	
	5.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 장 유류피해지역주민의 면접결과 분석 ···································	23
	1. 유류피해지역주민의 면접결과 분석	· 123
	2. 유류피해사고에 대한 복지서비스 유형화	· 130
	3. 연구결과 요약	· 141
제	7 장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략1	42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방안	
	2. 서해안유류피해대책 종합관리기구 구축 방안	
	3. 단계적·지속성장가능형 복지시스템 구축	
	4. 차별적 인재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 166
제	8 장 결론 및 제언	171
	1. 유류피해지역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2
	2. 유류피해지역주민의 면접 연구결과 분석	
	3. 지역인재육성 전략	· 173
	4. 서해안유류사고 대책지원기구	· 174
	5. 단계적·지속성장 가능형 복지지원시스템	· 174
	참고 문헌	· 175
	부록	· 177

표목차

<丑	2-1>	영역별 Q표본(진술문) ·······1	1
	4-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류	0
<丑	4-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기준	9
<丑	4-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주거지원기준4	0
~丑	4-4>	근로자 문화생활 지원사업 이용대상시설	0
<丑	4-5>	공공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월 보육료	8
~丑	4-6>	공공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보육시간	8
~丑	4-7>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내용6	2
~丑	5-1>	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역 시군별 지원배정내역	8
<丑	5-2>	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역 시군별 지급내역6	9
~丑	5-3>	태안군 지원현황7	0
~丑	5-4>	보령시 지원현황 7	0
<丑	5-5>	서산시 지원현황7	1
<丑	5-6>	서천군 지원현황 ····································	2
	5-7>	홍성군 지원현황7.	2
<丑	5-8>	당진군 지원현황	3
<丑	5-9>	태안군 인구분포 ····································	4
<丑	5-10>	› 태안군 연령별 인구분포 ····································	4
<班	5-11>	· 태안군 노인인구분포7	5
< ☆	5-12>	› 태아구 어엇이구부포	5

<표 5-13> 태안군	산업별 현황76
<표 5-14> 보령시	인구분포79
<표 5-15> 보령시	연령별 인구분포
<표 5-16> 보령시	노인인구분포
<표 5-17> 보령시	어업인구분포
<표 5-18> 보령시	산업별 현황
<표 5-19> 서산시	인구분포
<표 5-20> 서산시	연령별 인구분포
<표 5-21> 서산시	노인인구분포
<표 5-22> 서산시	어업인구분포
<표 5-23> 서산시	산업별 현황
<표 5-24> 서천군	인구분포91
<표 5-25> 서천군	연령별 인구분포92
<표 5-26> 서천군	노인인구분포93
<표 5-27> 서천군	어업인구분포94
<표 5-28> 서천군	산업별 현황95
<표 5-29> 홍성군	인구분포97
<표 5-30> 홍성군	연령별 인구분포98
<표 5-31> 홍성군	노인인구분포99
<표 5-32> 서산시	어업인구분포99
<표 5-33> 서산시	산업별 현황100
<표 5-34> 당진군	인구분포103
<표 5-35> 당진군	연령별 인구분포104
<표 5-36> 당진군	노인인구분포105
<표 5-37> 당진군	어업인구분포105
<표 5-38> 당진군	산업별 현황106
<표 5-39> 태안군	의료시설 현황108
<표 5-40> 태안군	사회복지시설 현황109
<표 5-41> 보령시	의료시설 현황109
<표 5-42> 보령시	사회복지시설 현황110
<표 5-43> 서산시	의료시설 현황

<표 5-44> 서산시 사회복지시설 현황·······111
<표 5-45> 서천군 의료시설 현황·······111
<표 5-46>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현황······112
<표 5-47> 홍성군 의료시설 현황······112
<표 5-48> 홍성군 사회복지시설 현황······113
<표 5-49> 당진군 의료시설 현황113
<표 5-50> 당진군 사회복지시설 현황114
<표 5-51> 태안군 교육기관 현황114
<표 5-52> 태안군 사설학원 현황115
<표 5-53> 보령시 교육기관 현황115
<표 5-54> 보령시 사설학원 현황116
<표 5-55> 서산시 교육기관 현황116
<표 5-56> 서산시 사설학원 현황······117
<표 5-57> 서천군 교육기관 현황117
<표 5-58> 서천군 사설학원 현황······118
<표 5-59> 홍성군 교육기관 현황·······118
<표 5-60> 홍성군 사설학원 현황······119
<표 5-61> 당진군 교육기관 현황119
<표 5-62> 당진군 사설학원 현황······120
<표 6-1> 연구 참여자의 특성123
<표 6-2> 응답자 지역별 분포131
<표 6-3> P표본의 인자가중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2
<표 6-4> 유형별 응답자 분포133
<표 6-5> 유형별 eigen값과 설명변량 ·······133
<표 6-6> 유형별 상관관계133
<표 6-7> 각 유형별 진술항목 표준점수134
<표 6-8a> <유형 I>의 항목별 표준점수 ·······135
<표 6-8b> <유형 I>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차이가 큰 항목 ·······135
<표 6-9a> <유형 Ⅱ>의 항목별 표준점수 ·······136
<표 6-9b> <유형 Ⅱ>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차이가 큰 항목 ··································
<표 6-10a> <유형 Ⅲ>의 항목별 표준점수 ····································

<표 6-10b> <유형 Ⅲ>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차이가 큰 항목 ······	· 138
<표 6-11> 유형 간 일치하는 진술문과 평균점수	· 138
<표 6-12> 각 유형별 핵심의견	· 139
<표 7-1>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 146

그림목차

<그림	2-1>	연구모형
<그림	2-2>	분석절차
<그림	2-3>	Q-sort의 분포와 점수구성12
<그림	3-1>	재해복구 기간에 따른 서비스 조정25
<그림	3-2>	재해구호 네트워크
<그림	5-1>	서해안유류피해사고 재난선포지역
<그림	7-1>	지역인적자원개발 모형144
<그림	7-2>	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관리기구151
<그림	7-3>	충청남도청 조직도152
<그림	7-4>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조직도153
<그림	7-5>	태안군청 조직도155
<그림	7-6>	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통합 네트워크 시스템구축160
<그림	7-7>	제 1안 : 기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기구의 통합 후 확장(안)162
<그림	7-8>	제 2안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종합관리기구 설립(안)163
<그림	7-9>	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을 위한 단계적 복지시스템 구축166

제1장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2007년 12월 7일 07시 06분경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바지선이 정박 중인 홍콩(중국)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과 충돌하여 12,547kℓ(약 10,900톤)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서해안의 검은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유류오염사고는 태안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은 물론 남해안 일부까지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사고현장 인근지역인 충청남도 서 해안의 지역산업과 사회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 이는 바로 해당지역의 민심의 악화를 불러왔고 민과 관, 민과 민,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연쇄반응 현상으로 해당지역을 패닉상태로 만들었다.
 - 그러나 1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원봉사와 서해안 살리기, 민·관이 단결하여 복구한 결과,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정상을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이제는 방제중심의 치유보다는 복원과 사후모니터링이 강화된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 하며 오염발생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충남지역 서해안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각 단위별 재생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최우선적으로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인적자원들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하며, 특히 피해가 심한 수산업, 관광분야 종사자들 이 지역 내에서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하며, 이를 위해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의 발굴과 직업 전환방안 등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여건이 반영된 새로운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구도의 복지시스템의 도입과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국내의 복지시스템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재생이 가능한 인적자원의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한다.

2. 연구의 목적

○ 서해안기름유출사고가 가져온 지역적 부(負) 의 효과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단편적이 아닌 종합적·통합적인 대책수립의 필요하며, 특히 피해지역주민의 교육욕구에 대한 파악과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고와 연결되는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고 이후의 지역사회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갈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류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농어촌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유사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지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이 해당지자체들에게는 '기회적'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차원의 소극적인 대응자세보다는 안전복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학교교육차원의교육복지를 넘어선 지역공동체의 주민교육복지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육성하여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때 지역적 피해에 대한 극복의지와 지역공동체의 복원의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생산지향적인 변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유류사고 피해지역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해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들, 즉 인재육성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통합관리기구 방안, 직업재활교육 방안, 교육복지 방안 등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의 인재육성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 첫째, 재난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기존의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체계와 복지욕구를 검토한다.
- 둘째, 우리나라 복지서비스현황을 검토하여 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역에의 도입가능 성을 모색한다.
- 셋째, 유류피해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 복지기관 현황, 교육기관 현황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¹⁾ 안전복지서비스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행정이나 사회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재난취약지역이나 시설, 개별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종합컨설팅형태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 넷째, 유류피해사고지역 주민을 심층 면접하여 주민의 욕구에 대해 분석하고, Q방법 에 의한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유형을 분석한다.
- 다섯 번째, 지역인재육성전략을 방안을 제시하고, 서해안유류피해대책종합관리기구 안을 도출한다.
- 여섯 번째, 단계별 지속성장 가능한 복지시스템과 차별화된 인재육성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제 2 장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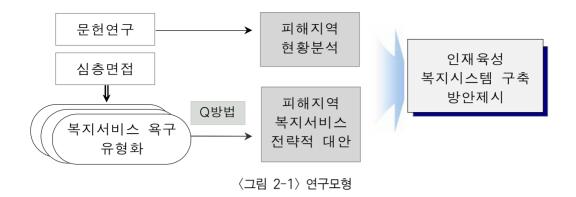
1. 연구 참여자

○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 (Hebei Spirit)호'의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2007년 12월 8일 재난선포를 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6개 시군의 지역과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 본 연구는 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서해안 인재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피해지역 주민과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또한 면접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 방법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절차

(1) 문헌연구

□ 재난관련 문헌고찰

-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자료조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검 토를 하였다.

□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제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및 재활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등 분야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였다.
-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현황조사를 통하여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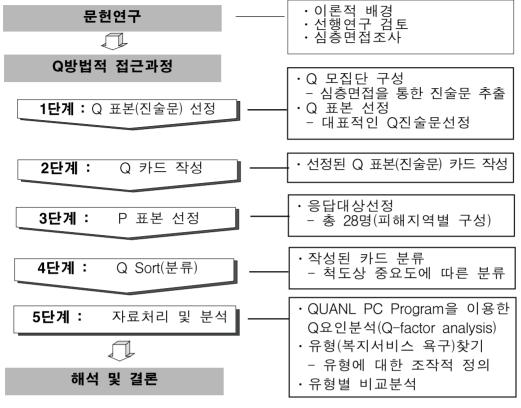
피해지역의	현황조사

- 피해지역의 피해현황조사, 경제적 지원현황을 조사하였다.
- 사회경제적 현황, 복지시설 현황, 교육시설 현황 등 피해지역의 전반적 복지서비스 환경 조사를 조사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

- □ 피해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관계자에 대한 의견조사
 - 피해지역주민의 피해현황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를 위해 피해지역주민, 공 무원 및 NGO단체 실무자 등 9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 심층면접 내용은 종합관리기구에 대한 의견, 경제활동영역, 심리적지원 영역, 가족 및 교육복지영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3) Q방법 활용분석



〈그림 2-2〉 분석절차

- □ Q모집단과 Q진술문 추출
 -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 선정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포화상태(saturation)²)가 되도록 전문가와의 심층면접(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 심층면접 관련 질문지는 <부록 1>과 같고, 총 23개의 Q진술문(Q표본)을 추출하였다. Q진술문을 영역별로 확정한 결과 <표 2-1>과 같다.

²⁾ 포화상태(飽和狀態:saturation)는 사전적 의미로서 '더할 수 없는 양(量)에 이른 상태'이며, 질적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끝내는 시기로 '더 이상의 관찰, 면접, 또는 문서고찰이 불필요한 것을 반복한다는 느낌을 주며 새로운 정보를 더 이상 주지 못할 때'를 의미함(유태균 역, 2001:136-137).

〈표 2-1〉영역별 Q표본(진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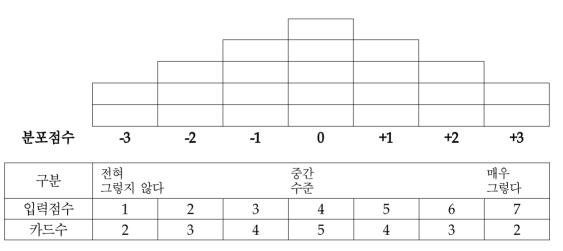
영역	진 술 문
통합복지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 긴급구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군관민네트워킹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	 ·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직업재활 지원	 · 피해주민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자녀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지역기업체의 지역주민 우선채용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다양한 업종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서/심리/ 의료적 지원	 · 피해주민을 위한 정서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병원비 할인혜택이 필요하다. ·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녀교육 지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 피해주민자녀를 위한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 타지에서 대학 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특성화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P표본

○ 선정된 Q표본 23개의 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어느 수준 의 중요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유형이 어떠한지를 찾아내기 위한 문항 분류과정 인 Q분류(sort)를 위하여 분류실시 대상인 P표본을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P표본은 태안, 서천 및 기타지역에서 총 28명을 선정하였다. P표본은 피해지역주민 11명(39.3%), 공무원 12명(42.8%)과 기타 피해주민이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은 응답자 5명(17.9%)으로 구성하여 23개의 Q표본을 Q분류하였다.

☐ Q-Sort(분류)

- Q-sort는 Q-표본과 P-표본의 선정이 끝나면 P-표본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Q-표본을 분류하도록 하여,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과정임. 응답자로 하여 금 진술문이 인쇄된 카드를 Q-표본분포 틀에 맞추어 분류하게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그림 2-3>의 분포와 같이 총 34개를 「전혀 그렇지 않다」(-3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로 하고, 각 해당점수별로 별도의 해당 개수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림 2-3> Q-sort의 분포와 점수구성

○ Q-sort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성별, 연령, 직업 및 학력 및 피해주 민여부 등을 익명으로 조사하였다.

3. 분석도구

- Q 방법 활용 분석은 Q-sort의 결과에 대해 QUANAL 프로그램을 이용, 코딩하여 처리하였다. 23개의 항목은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 분석 및 해석은 각 유형에서 인가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다시 사후 진술을 실시하여 유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각 유형을 구성하는 23개의 진술문은 표준점수 ±1.0을 기준으로 강하게 긍정하는(+1.0이상) 진술문과 강하게 부정하는 (-1.0)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을 설명하였다.

제 3 장 재난관련 문헌검토

1. 재난관리 법적체계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의하면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 ·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 2004.3.11 법률 7188호, 최근개정 2008.2.29 법률 제8856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목적)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따라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이 법에서는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또한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 재해구호법4)

- 재해구호법은 재해에 따른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기서 "이재민"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한다.
- 재해구호법은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둔다.

^{4) 『}재해구호법』 제정 1962.3.20 법률 제1034호, 최근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자연재해대책법5)

-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의 "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또한, 이법에서의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 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 및 어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의 "재해"라 함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하며, "농업재해"라 함은 한해· 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하다.

^{5) 『}재해구호법』 제정 1967.2.28 법률 제1894호(풍수해대책법), 최근개정 2008.3.28 법률 제8999호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정 1967.1.16 법률 제1874호(농업재해대책법), 최근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이 법에서의 "재해대책"이라 함은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 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선박에 의한 유류운송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의 "선박"이라 함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 된 모든 형의 항해선(부선을 포함한다)을 말함.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거나 선박 안에 그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 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선박으로 한다.
- 이 법에서의 "유류"라 함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원유· 연료유·윤활유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법에서의 "유류오염손해"라 함은 다음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 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 한 이익상실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정 1992.12.8 법률 제4532호, 최근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나.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 이 법에서의 "사고"라 함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동일한 원인을 가지는 일련의 사건을 말하다.
- 이 법에서의 "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8)
 -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 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의 "선박"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선박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선박을 말한다.
 - 이 법에서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 이 법에서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8.3.14 법률 제 8898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이 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법은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 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 법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 이 법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가.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나.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다.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라. 그 밖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이 법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체계

- □ 유류오염사고시 손해배상절차 및 정부의 역할(김성수, 2007)
 -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1년 유류오염 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 양협약의 시행과정에서 손해의 규모가 증대하고, 환경 손상 자체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 양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개정의정서(이하 각각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이라고 함)가 채택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월 13일에 위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다.
 - 이번 태안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선박소유자(홍콩선적인 헤베이 스피리트 쉬핑 회사) 와 보험자(중국 P&I + SKULD P&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들의 책임한도액은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8,977만 SDR, 즉 한화로 1,300억원 (=8,977만 SDR X 1,450 원/SDR)이다.
 - 피해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국제 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23조), 이 때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2억300만SDR(한화 2,943억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약을 합산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제기금 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단독 책임한도액은 1,643억원이다.

○ 따라서, 정부는 오염된 환경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화복원사업이 시행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환경·해양·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오염에 의한 환경 피해조사는 물론 어민과 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험이나, 정보와 자원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다각적 차워의 방안

-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만 한다(박정현, 2007).
- 종합적인 해양오염을 극복한 수범사례 지역으로 하고 또 피해지역 주민들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 시점에서 그 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이재은, 2007).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모두다 한꺼번에 원고인단으로 들어가서 방재비용부터 생태환경복원비용까지 100% 완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할 주체들이다(여운철, 2007).
- 현장실정과 관련해서 물론 맨손어업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시급 하다(권희태, 2007).
- 많은 분들이 현업에서 떠나야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만 듦으로써 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하다(최종인, 2007; 위평량, 2007).
- 개인 간의 갈등 또는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된 지역간의 갈등, 각각의 공식 비공식 조직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해결방안이 필요하다(최종인, 2007).

- 재난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는 것처럼 충남의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만 가 장 빠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태안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을 국가적인 자원봉사 혁명으로 잘 응용을 해서 단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하려는 인력들을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이든 국가이든 아니면 순수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을 관할하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류상일, 2007).
- 직접적으로 생계지원비를 돈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안도 좋겠지만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벤트를 벌여서 지역주민들의 실상을 직접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송두범, 2007).
- 정부와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들은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복원계획 마련 등 수산 자원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재원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송두범, 2008).

□ 특별법의 개정 방안(오용준 외, 2008)

- 2008년 3월 1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방법 위주로 적시하고 있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서해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을 지원하는 법 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 특히,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의료특별지원 외에 농어업인에 대한 자금융자 및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특별법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법 개정사항을 제안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고용안정

- 기름 유출사고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사업자가 업종전화,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경우 업종 전환 또는 경영 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군수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

- 정부가 유류오염사고 피해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식하게 되는 지역주민 생활대 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피해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다.

③ 피해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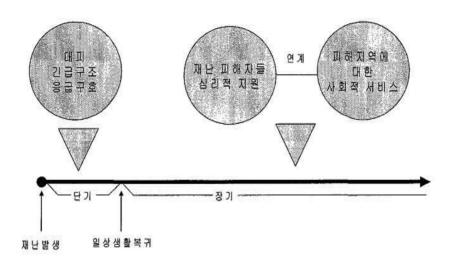
- 국가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지방세법」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개발사업 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해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난관리 복지체계

- 재난피해지역 주민들의 재난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민관이 협력을 통한 단계적·통합적 차원의 재난안전 복지체계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전 국재해구호협회, 2006).
-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 구호체계 구축
- (1)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제도화(단기)
 - 한시적 생계지원,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 대출, 학비지원,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혜 택 등을 마련한다.
- (2)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서비스(장기)
 -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사회복지전문인력과 상담전문기관의 인력 및 프로그램 마련,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연계망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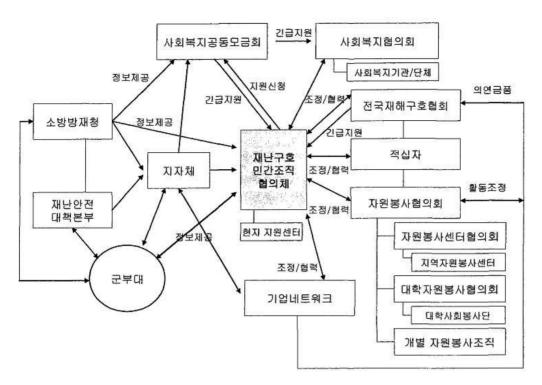
〈그림 3-1〉 재해복구 기간에 따른 서비스 조정(전국재해구호협회, 2006)

(3) 재해구호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구호조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전문적 제공기관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 재해구호 네트워크 구축

○ 재난구호민간조직협의체 구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기업, 적십자, 사원봉사협의회, 지자체, 군부대, 소방방재청,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다양한 구호조직 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림 3-2〉 재해구호 네트워크(전국재해구호협회, 2006)

□ 재해구호 서비스 전문조직 육성

- 사회복지조직이나 상담기관 등의 구호관련 서비스제공 보다 전문적인 재해구호 전문 조직 필요하다.
- 직접적인 구호서비스가 가능한 현장경험 많은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하다.
- 기존서비스 자원의 회대 활용 : 지역사회복지관, 상담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 재해구호 관련 교육, 연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4.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

○ 허베이 스피티르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에서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다(희망제작소, 2008).

□ 경제적지원 욕구

- 태안의 태안주민들이 사건이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 등을 보면 경제적 지원 및 보상이 65.4%로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안주민들은 충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 책임의 불분명에 따른 보상 금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두 차례에 걸쳐 긴급생계비를 지급하였으나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없이 구두로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다.
- 태안주민의 면접과정에서 특별법제정 등 보상관련 사안의 불투명성, 보상대상선정 및 등급부류기준 설정에서 무워칙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 의료지원 욕구

○ 사고의 초기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방제작업으로 피해지역주민들의 유 독물질로부터의 노출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함. 즉, 허베이 스피리 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재 난을 당하여 정신없는 상황에서 방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고무장갑만을 끼 고 거의 하루 종일을 타르 덩어리 제거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운유로부터 방출된 고농 도의 휘발성 유독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필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급성인체영향으로 인한 증상으로 호흡기 통증,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두통, 전신 피로감 등이 지역주민에서 많이 나타남. 또한 원유 유출시 방제작업 참여자들에 게서 만성 호흡기 증상,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으며 피부암까지 유발 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원유의 급성 증상에 지급된 것은 단지 진통제뿐이었으며 태안 주민 의 면접과정에서 사고 초기단계의 의료지원체계의 부재에 대한 실망감, 정부차원의 체계적 의료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 심리적지원 욕구

-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생명인 권운동본부가 2008년 2월 태안주민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안주민 10명 중 2명꼴로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62%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주민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로 정신적 피해정도 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접적 심리의학적 스트레스 피해자 중에서는 우울, 강박, 불안장애를 보였다.
- 또한 사고발생 후 8주차에 실시된 태안지역의 129명 어린이에게 우울과 불안에 대한 심리조사 실시되었는데 조사결과 6.5%의 어린이에게서 우울증세가 나타냈다.

제 4 장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을 경제적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교육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서해안 환경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경제지원서비스

- 1) 근로자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융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종류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 노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65세 이상)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에 소요되는 제비용

〈표 4-1〉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류

고티시크	종류별 추가서류			
공통서류	의료비	흔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 융자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호적등본	- 의료비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사망진단서 또 는 사망확인서	- 진단서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종류별 각 700만원(단,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1인당 1,500 만원 (2종류 이상 시), 융자조건 :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생계비 :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신청서 접수기간 이내

- 노부모 요양비 : 의사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90일 이내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
 -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 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 선발대상 : 만60세 미만의 산재장해자로서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자
 - 선발예정인원 : 연간 약 3,000명(초기면접→직업평가→재활계획수립 후 선정)
 - 훈련 직종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
 - 단,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학위부여 목적으로 개설된 정규 교육과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득과정(제1종 대형면허증, 건설기계·특수자동차 면허와 특수면허취득과정은 지원 가능), 외국어 및 예체능연 마과정(태권도)등은 지원 제외
 - 훈련 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훈련 기간 : 1년 이내
 - 지원 금액: 수강료(학원비), 실험실습비 등 1인당 총 130만원 이내의 훈련비용을 훈련 기관에 직접 지원하며, 훈련생에게는 월 소정의 훈련수당(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0%) 지급 및 수료 후 6개월 이내 직업복귀 시 직업준비금(150,000원)을 지급

- □ 산재환자를 위한 자립점포임대지원
 -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업 희망지역의 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전 기간에 걸쳐 무료로 경영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한다.
 - 지원 대상 : 안산/광주재활훈련원 훈련수료자
 - 지원 내용: 점포: 1인당 7천만원(특별시 및 광역시 1억원 이내)이내의 전세금 또는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보증금(단, 월80만원 이내의 월세가 포함된 경우 지원자 부담으로 지원가능). 이자율 2.0%,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최장 5년 이내
 - 지원 절차 : 지원신청(연중수시) → 자격심사 → 점포선정과 창업컨설팅 및 감정평가
 → 지원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전세금 입금 → 전세권 설정 → 사업
 개시 및 사후관리(경영컨설팅 제공 등)
 -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점포지원자에 대하여 창업직전·직후 창업컨설팅 1회, 전 문경영컨설팅 3회 등 총 4회
-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대부대상 : 생활정착금대부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산재 사망자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9급 해당자
 - 대부조건 : 대부사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대부한도 : 1세대당 1,000만원(신용대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5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000만원,
- 대부이율 연리 3%, 대부기간 10년 이내,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중복신청 가능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8세 미만의 아동. 단, 연 령산정기준일은 2008.1.1.(2000.1.1 이후 출생한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 지원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절차 및 요령
 - 지원대상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아래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연령산정기준일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2008년말까지 지원

- 읍면동장은 아동의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사, 행방불명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다.
-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달부터 지원하되 지원기준일(급여신청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경우 50%(25,000원) 지급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한다(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복지자금 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 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도록 한다.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 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다만,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융자 및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는 불가능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저 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영세민 전제자금"을 이용 하도록 반드시 안내한다.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원

○ 자금대여기관 : 대여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전국 농협 영업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다만, 연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 중의 원리금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추가대여 : 대여를 1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 불가

□ 영구임대주택 입주

- 대상자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우선 공급
- 선정방법
 - 인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 이주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고려한다.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원서비스

□ 소년소녀가정 지원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 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역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70천원이상/인·월(지방이양)

-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 인 소년소녀가정

○ 지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5)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지원방법 및 절차
 -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지원 완료함. 또한 긴박한 상황인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완료하여 대상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①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② 긴급지원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 즉,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표 4-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주거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방법 및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개인가정 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를 확보하여 제공
 -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to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 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표 4-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주거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281,591	470,258	619,706	
중소도시	185,171	309,237	407,511	
농어촌	106,326	177,566	233,997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4,724원, 중소도시 49,137원, 농어촌 28,216원씩 추가 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간

-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2. 직업재활서비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연령: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의 범위 안에서 훈련대상자 의 연령을 따로 정하거나 필요 학력을 정할 수 있다.

○ 훈련내용

- 양성(양성)훈련 :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전직(전직)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방법

- 집체(집체)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 원격훈련
- □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비진학 청소년"이라 한다)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훈련내용
 - 신규실업자등훈련 :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여성가장실업자훈련 :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 훈련기간: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 중동 시행 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이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동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지원대상 : 비진학 청소년

○ 훈련내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우선선정직종훈련 대상자
 -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우선선정직종훈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대상자, 훈련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융자ㆍ지원금 내역: 융자금 내역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한도액: 5억원 (단,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 융자의 경우 시설 전환비 무상지원액 포함), 상환기간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연 2%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 융자방법 대행금융기관(농협, 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 지원금 내역: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한도액: 시설전환비 1억원(단, 사업주단체는 2억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지원비율: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품구입소요 비용의 60%~80%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농업인	등의	저언지	우
O Hi!	0	11' H 1	Ιń

- 다른 산업으로 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안정된 전업이 보장되도록 적절히 지원
- 지원내용
 -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 전업장려금의 지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훈련준비금·훈련비·가족생계비를 포함한 훈련수 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취업준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농업인등의 전업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의료지원서비스

1)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산재환자의 재활스포츠 지원
 -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 업·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

- 지원종목 :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요가 중 1개 종목
- 지원범위 :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지원, 스포츠 시설에 월단위 선 지급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
- 선발절차 : 재활스포츠지원 신청서 접수 → 재활스포츠대상자 해당여부 자문의뢰 및 확인 → 스포츠기관 실태조사 및 약정체결 → 지원자 선발확정 → 선발통지

□ 산재환자의 의료재활지원

-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을 개설·운영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
- 지원대상 : 진폐 등 진행성 직업병(특수직업병)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 인 이상인 의료기관
- 지원범위 :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강사비 포함) 1인당 월 35천원 한 도(월 60%이상 참가자)
- 지원기간 : 취미활동반 가입일 해당 월부터 탈퇴일 해당 월까지 지원
- 지원절차 : 병원 내에 취미활동반 개설 → 취미활동반 개설 신고서 및 의료재활지원 계약서 제출 → 취미활동반 운영 → 의료재활보조금 청구(병원→지사) → 비용지급처리

2)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적용대상 : 「재해구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 * 재해구호법 제2조(구호의 대상) : 이 법에 의한 구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
 - * 타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연초에 기 배정한 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 급여개시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장(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재난사태를 선포한 날부터 실시
 - 사후관리
 - 급여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피해 및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월 이내로 한다.
 - 의료급여 중 우측상단에 의료급여기간을 명치하여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기간 만료 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상실 처리를 한 후 반드시 의료급 여증을 반납 또는 회수하여 사후 건강보험과의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의료지원
 -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방법 및 절차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①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함.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상한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구에서는 1회 지원 시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의료급여 120만원, 건강보험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자의 명단을 즉시 건강보험공단(본부)에 통보해야한다.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지원한다.

○ 지원횟수

-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4. 심리지원서비스

1) 근로자를 위한 문화생활지원사업

- 사업개요 :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청구
-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비(20만원) 지원

〈표 4-4〉 근로자 문화생활지원사업 이용대상시설

구 분	이 용 대 상 시 설
숙박시설	- 콘도, 펜션, 유스호스텔, 민박, 기타 숙박시설
체육시설	-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 각종 스포츠센터(스쿼시,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 각종 무술도장(태권도, 유도, 권투, 검도 등)
문화시설	-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각종 박물관, 고궁, 기념관, 연극, 음악회, 미술관 - 동·식물 전시장(아쿠아리움, 서울대공원 등), 국제 전시장(COEX, KINTEX 등) - 운동경기 관람장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 제외시설 : 호텔, 골프시설

○ 지원자격 : 직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제외근로자

-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 과세액이 6만원 초과 근로자
-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의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초과 근로자
- 당해연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휴양콘도 이용 근로자
- 지원범위 : 1가구당 1인에 한해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연간 20만원 한도). 단, 매 1회 이용시 지원하도 10만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초순~2월경(세부사항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참조)

2)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산재환자의 재활상담

-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 중 야기되는 직업·사회복귀에 대한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직장복귀 경로탐색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직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직업복귀서비스(직업복귀 상담, 직업훈련, 재취업 및 자영지원) 및 사회복 귀서비스(심리상담,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재활상담과정: 산재발생 → 위로방문 → 심리상담 등 기초상담 → 직업복귀 경로 탐색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직업평가 → 사례관리계획 수립 → 각종 재활 서비스 제공(직업 및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 → 직업배치 및 사회복귀 → 사후지도(직업생활 안정 유지)

□ 산재환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 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 수혜대상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자 중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 또는 통원요양중 인 자,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 판정 받은 자

○ 대상프로그램

- 경제적 안정과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또는 창업 알선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프로그램
- 중증산재장해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기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재활프로그램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가 산재장애인에게 직장복귀전에 실시하는 직종전환 또는 원직 복귀 준비를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 심사기준 및 방법
 - 공단은 제안서를 접수하면 제안기관에 대한 평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능력·필요성·효과성, 지원비용의 적절성 등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 심사절차는 적격심사, 서류심사, 현장방문, 면접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공단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노동부, 학계, 교육훈련전문가, 단이 참여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공단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심사 결과를 제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 시	·ト전승인(사업개시 10일전까지) → 위탁교육비 지원(80% 사전지원) → 사
Ċ	업수행 결과와 위탁교육비 정산 신고(사업종류 후 15일 이내) → 정산방법
(=	수혜인원에 1인당 소요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장학생 캠프)
 - 겨울캠프
 - 참가대상: 중·고교에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200명)
 - 행사시기: 겨울방학 기간 중 (1~2월)
 - 여름캠프
 - 참가대상 : 중·고교에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200명)
 - 행사시기: 여름방학 기간 중 (7~8월)
 - ※ 캠프행사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 공모를 통한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 캠프 전문위탁업체 공모: 매년 10월 ~ 11월
- □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 사업(휴양콘도 서비스)
 - 이용대상 :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용내용 : 콘도운영구좌 수 702구좌

- 이용가능콘도 : 금강산, 금호, 대명, 일성, 풍림, 켄싱턴, 토비스, 한화, M캐슬
- 이용기간 : 연3회 이하 (1회당 3박 4일 이내)
- 이용료(1박기준) : 33,000원~99,000원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의 콘도예약서비스 접속 후 적격 인증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 여명세서(1년미만 근속자)를 팩스로 제출)
- 임금관련 자료 확인 후 근로자여가활용지원사업규정의 선발우선순위(고연령 및 저임금 우선)에 의하여 선발
- 선발 후 콘도 이용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마이페이지 출력가능)

○ 신청기간

- 평일 이용시 이용 희망일로부터 2일전까지
- 주말, 연휴 이용 시는 21일전까지
- 여름성수기(7. 20~8. 20): 매년 6. 30까지
- 겨울성수기(12. 21~1. 31) : 매년 11. 30까지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소년소녀가정 정서적 후원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 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후견인은 결연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 후원금의 부적적한 사용방지
- 결연기관(어린이재단)과 협조체계 강화
 -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 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 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접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형제, 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정에서 구성원중 한명이 성인이 되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참조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것
 - 예) 형제 · 자매로만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정에서 형이나 누나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동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동생을 분리하여 별도의 수급자로 선정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월 평균 220만원/개소,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국고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한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적용 유예 시설도 포함.
- 지원대상 선정 : 각 시·군·구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선정기준표」(예시 : 서식29호)에 의해 심사·선정. 선정기준표에 의해 시설 운영기간, 시설·종사자 기준, 운영시간, 이용 이동 수, 프로그램 등 분야별가중치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선정

5. 교육복지서비스

- 1)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사업(어린이집)
 - 입소대상자 : 일반원칙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방과후반 : 만 12세까지
 - 입소신청 : 각 어린이집별로 입소원서 작성 및 접수

〈표 4-5〉 공공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월 보육료 ('08. 3월 ~ '09. 2월)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금	액	372,000원	327,000원	270,000원	185,000원	167,000원

〈표 4-6〉 공공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야간연장보육
보육시간	07:30~19:30	07:30~14:30	19:30~22:30

※ 야간연장 보육실시 어린이집 : 부산, 군포, 부천, 수원, 창원

□ 근로자장학사업

○ 선발대상

- 소속 기업에 3개월 이상(신청 직전년도 12.31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중임 월평균임 금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 중 신청일 현재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 는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제외대상

- 신청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 합계액이 259만원을 초과 근로자
-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거나 토지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는 자
- 장학금지급 : 장학금은 선발된 당해연도 1년간 지급(분기별로 지급)
- 선발기준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세대 당 1인 선발

- 우선순위 : 1순위 : 소년·소녀가장 근로자

2순위: 모・부자가정 근로자

3순위 :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4순위 : 장애인근로자 5순위 : 그 밖의 근로자

2)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선발대상: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7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 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 지급범위 :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등 매년 정례적 등록금 전액

○ 지급기간 : 선발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 지급방법 :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입금

○ 선발신청 : 신청기간 : 매년 별도 지정 (1월중)

○ 선발기준 : 선발인원결정 -장학금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

○ 선발 우선순위

①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② 제2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4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⑤ 제5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위 사업내용은 매년 장학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 선발대상 :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산재장해 제1급~9급의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중 대학 에 재학 중인 자로서 대부재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결정

○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교, 각종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기관과 대학원, 외국대학은 제외

○ 대부조건

- 대부금액:1인당 매학기 실납부 등록금 전액(십만원단위 절사)
- 대부기간 : 거치기간 : 대부일로부터 정규수업년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까지(연 1%) 상환기간 4년(연 3%, 원금 균등분활 상환)
- ※ 군입대시 거치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 복무기간에 따라 최장 3년 까지 연장가능
- 대부신청 : 신청기간 : 1학기 학자금(2~3월), 2학기 학자금(8~9월)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자녀학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 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령상의 교육보호 적용
-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입학금은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고, 수업료는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학비지원대상자가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장학금수혜자 또는 장학 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 후 동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한다.

4)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복지교사를 사회적일자리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시작("07년 4월)
 - 아동복지교사는 전일형 및 프로그램형으로 지원되며, 교사 분야는 기초학습, 아동지 도, 보건위생, 야간복지,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능활동, 체육활동, 안전귀가지도, 지역 사회복지사의 총 10개 분야로 구분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제공

〈표 4-7〉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내용

교사분야	활동내용	7	지원일	<u>수</u>
① 기초학습교사	- 전과목 지도/개별 및 그룹지도 - 학습부진아동 지도	전일형	주간 주야	
② 아동지도교사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 아동교육 - 생활 지도, 문화활동 지도 - 기타 업무지원	전일형	주간 주야	주5일 25~35시간
③ 보건위생교사	- 지역이동센터 내 아동급식 - 위생 및 환경관리 담당	전일형	주간 주야	· (전일형) - 파견
④ 야간복지교사 (아동/청소년)	- 야간시간대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과제물 지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전일형	야간	
⑤ 기초영어교사	- 기초영어 및 초등영어 - 그룹지도	전일형	주간 주야	
	- 二百八工 	프로그램형	시간	
⑥ 독서지도교사	- 아동의 독서능력 향상 - 그룹지도	전일형	주간 주야	주5일 30~35시간
		프로그램형	시간	(전일형)
⑦ 예능활동교사	- 음악, 미술 등 예능활동 지도	전일형	주간 주야	또는
		프로그램형	시간	주6~21시간
⑧ 체육활동교사	- 기초체력반, 사회체육반 활동지도	전일형	주간 주야	(프로그램형) 파견
	- 축구반 활동지도	프로그램형	시간	
⑨ 안전귀가지도 교사	- 아동의 안전귀가 - 야외활동 이동지원 등	프로그램형	시간	
⑩ 지역사회복지사	- 아동 및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등	프로그램형	주간 주야	주6~21시간 (프로그램형) 파견

○ 추진체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사업 운영 관리를 전담기관에 위탁

- 위탁단체는 사업기반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시행착오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7년도와 동일한 단체에 위탁 운영
 - ① 중앙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위탁): 실업극복국민재단 등 4개 단체
 - ② 시·도지원센터(광역지자체<시·도> 위탁)
- 보건복지부·지자체,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전달체계별 역할
- 지원분야 및 형태 : 아동복지교사 총 10개 분야, 전일형 및 프로그램형으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시간 및 신청 분야에 따라 파견
- 강사형제 교사지원(2008년 시범사업)
 - 2008년 시범운영 교사분야로, 센터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 예정
 - 전문프로그램 운영에 파견(예: 환경, 경제, 지역역사문화, 인권교육, 성교육 등)

5)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지원서비스

-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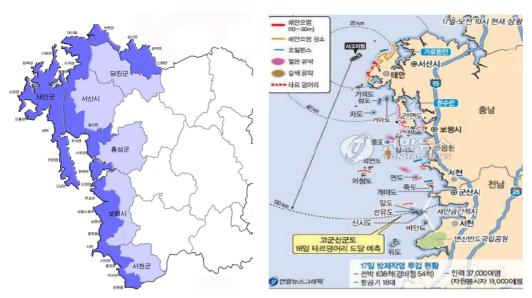
-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1회 이상 파견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부모에게는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 지도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 지도
-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1년(12개월)
-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바우 처 지원 중단

제 5 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사고지역 현황

1. 피해지역 지원현황

1) 피해현황

-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 14만 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와 해상 크레인을 실은 삼성 중공업 소속 1만 1,800톤급 부선이 충돌, 원유 1만 2천 547kℓ(78,906배럴)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 2007년 12월 8일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6개 시군을 재 난 선포하였다.
- 태안 34,313가구, 보령시 7,604가구, 서천 4,165가구, 서산시 2,112가구,홍성 1,033가구, 당진 2,825가구 등 6개 지자체에 총 52,552가구가 피해를 보았다.
- 어장피해는 11개 읍면 473개소 5,159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태안군이 8개 읍 면 361개소 4,088ha로 가장 많고, 서산시가 3개 읍면 112개소 1,071 ha로 나타났다.



〈그림 5-1〉서해안유류피해사고 재난선포지역

2) 지원현황

- (1)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특별지원(2008.1.18)
 - 예산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대책예비비 74억원 지원(12.12)
 - 긴급방제용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12.10/10억, 12.21/40억)
 - 국비 300억원 긴급 생계지원금 송금완료(충남도 '08.1.2)
 - 피해지역 학교운영지원금 등 20억 지원(12.20)

○ 금융

- 해당지역 금융 · 세정 종합지원센터(농협, 수협) 설치(12.14)
- 농·수협을 통해 특별영어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1,500억원 신규 지원(저리융자)
- 특별지원자금 최대 1,500억원(기은500, 산은 1,000) 금리우대
- 충남지역 총액대출한도 400억원 추가 배정(한·은)
- 기존 대출금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 중소기업,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우대보증 제도 개선

○ 세제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납기를 연장(최장 9개월)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구호물품 및 자원봉사자(일당 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 피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6개월 징수 유예

○ 후생복지

- 태안군 재난선포지역 4개면 유·초·중·고교 재학생 중 피해 학생에 대한 수업료, 학교 급식 지원('07.12~'08.2)

- 특별재난지역 연고 공무원, 장병 재난휴가 실시
- 전문 인력 및 장비 투입
 - 오염해역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추진('08.1.2)
 - · 캐나다전문가 초정 인력전문교육 실시
 - 피해배상 문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 · 법률구조공단 서산지부에 변호사 등 6명 배치
- (2) 정부의 피해지역 특별지원
- □ 시군별 배정내역
 - 정부는 6개의 유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약 913억원의 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 배정하였다.

〈표 5-1〉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역 시군별 지원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계	91,330	14,330	10,708	7,636	3,081	52,774	2,801
1 단계	55,830	8,615	8,434	3,931	2,072	31,753	1,025
2 단계	33,500	4,215	2,274	3,205	1,009	21,021	1,776
3 단계	2,000	1,500	0	500	0	0	0

- 1단계 2008년 1월 19일 생계안정자금 558.3억원을 배정하였다. 지원금은 국비 300억 원, 도비 100억원, 국민성금 158.3억원으로 구성된다.
- 2단계 2008년 2월 1일 생계안정자금 335억원을 배정하였다. 지원금은 국비 300억원, 도비 35억원으로 구성된다.
- 3단계 2008년 2월 4일 생계안정자금 20억원 배정하였다. 지원금은 도비 15억원, 국민 성금 5억원으로 구성되었다.

□ 시군별 지급내역

〈표 5-2〉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역 시군별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배정액	91,330	14,330	10,708	7,636	3,081	52,774	2,801
지급액	88,557	14,267	8,218	7,570	3,068	52,774	2,660
잔 액	2,773	63	2,490	66	13	0	141

[※] 태안군은 4. 16일, 국민성금 80억원을 생계비에 포함 28,365백만원을 8개 읍면에 배정, 지급완료

가. 태안군

〈표 5-3〉태안군 지원현황

(단위 : 세대/만원)

		지급/	세대 및	지	급 내	역	(만원)	지 급	급 내	역	(만원)
부락명	총세대	<u>-</u>	금액	A (297)		B(180)		С		D	
		세대	금 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태안읍	10,319	5,895	백만원 4,398	5,895	4,398	0	0				
안면읍	4,469	3,530	백만원 4,919	228	492	2,780	3,999	522	428		
고남면	1,200	1,010	백만원 1,566	963	1,533	47	33				
남면	2,022	1,678	백만원 2,468	217	453	1,379	1,950	82	65		
근흥면	2,801	2,403	백만원 5,354	661	2,003	1,109	2,789	48	56	585	506
소원면	2,733	2,343	백만원 6,875	152	828	957	4,152	551	1,374	683	521
원북면	2,192	1,645	백만원 4,557	248	1,417	562	1,813	775	1,285	60	42
이원면	1,079	898	백만원 2,239	79	244	689	1,815	84	148	46	32
계	26,815	19,402	32,376	8,443	11,368	7,523	16,551	2,062	3,356	1,374	1,101

나. 보령시

〈표 5-4〉 보령시 지원현황

(단위 : 세대/만원)

		지급	세대 및	지 급 내 역 (만원)							
부락명	총세대	ا ا	금액	A (220)		B (170)		C (70)		D	
		세대	금 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웅천읍	1,884										
주교면	1,872										
천북면	1,391	574	106,830	363	79,860	780	20,74	89	6,230	0	0
남포면	1,208	205	42,050	156	34,320	43	7,310	6	420	-	-
대천5동	3,453	2,435	443,600	1,577	346,940	366	62,220	492	34,440	0	0
오천면	2,445	1,667	424,970	433	147,220	371	107,590	135	36,450	479	105,380
계	12,253	4,881	1,017,450	2,529	608,340	1,560	179,194	722	77,540	479	105,380

〈표 5-5〉서산시 지원현황

(단위 : 세대/만원)

		지급서	네대 및		7	() ·	급 내	역	(만원)		
 부락명	총세대	금	-액	A((445)	В	(378)	С	(200)	D	(70)
1 10	0 " "	세대	금 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대산읍	6,263	1,007	309,831	383	170,435	82	30,996	542	108,400	0	0
인지면	541	6	420	0	0	0	0	0	0	6	420
부석면	1,570	317	113,148	166	73,870	51	19,278	100	20,000	0	0
팔봉면	1,257	440	163,768	294	130,830	21	7,938	125	25,000	0	0
지곡면	2,025	555	212,977	377	167,765	54	20,412	124	24,800	0	0
성연면	147	1	70	0	0	0	0	0	0	1	70
운산면	253	3	210	0	0	0	0	0	0	3	210
음암면	578	4	280	0	0	0	0	0	0	4	280
해미면	1,296	17	1,240	0	0	0	0	0	0	17	1,240
고북면	849	4	280	0	0	0	0	0	0	4	280
동문1동	6,110	22	1,540	-	-	-	-	-	-	22	1,540
동문2동	2,555	202	14,140	-	-	-	_	-	-	202	14,140
읍내동	6,946	34	2,380	-	-	-	_	-	-	34	2,380
수석동	4,819	12	840	-	-	-	-	-	-	12	840
석남동	5,774	10	700	-	_	-	_	-	-	10	700
계	40,983	2,634	821,824	1,220	542,900	208	78,624	891	178,200	315	22,100

라. 서천군

○ 서천군은 5개 읍면의 총 4,165세대를 대상으로 약 75억원을 지원하였다. 서천군은 A 급 피해세대보다 B급 피해세대가 많아 주로 B급 세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표 5-6〉 서천군 지원현황

(단위 : 세대/만원)

부락명	총세대	지급세대	및 금액	지 A (급 내 297)	역 (만원) B(180)		
7 7 8	50/11/91	세대	금 액	세대	<i>- 금</i> 액	세대	ioo) 금액	
장항읍	5,603	775	139,739	0	0	775	139,739	
마서면	1,092	956	172,372	0	0	956	172,372	
종천면	589	412	74,287	0	0	412	74,287	
서면	1,971	1,444	266,311	110	25,784	1,334	240,529	
비인면	1,204	578	104,215	0	0	578	104,215	
계	10,459	4,165	756,924	110	25,784	4,055	731,142	

마. 홍성군

○ 홍성군은 2개 면의 총 1,033세대를 대상으로 약 31억원을 지원하였다. 홍성군은 A급 피해세대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표 5-7〉홍성군 지원현황

(단위: 세대/만원)

		지급세대	미 그래	지	급 내	역 (만	원)	
부락명	총세대	<u> 기업에</u> 네	× □ 11	A (2	297)	B(180)		
		세대	금 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서부면	1,312	987	293,139	987	293,139	0	0	
결성면	138	46	13,662	46	13,662	0	0	
계	1,450	1,033	306,801	1,033	306,801	0	0	

바. 당진군

○ 당진군은 4개 면의 총 10,475세대를 대상으로 약 26억원을 지원하였다. 당진군은 D과 C급 피해세대가 많고, 지원금 지급액은 A급 피해세대가 많다.

〈표 5-8〉 당진군 지원현황

(단위 : 세대/만원)

	えが	지급	세대 및	지	급 내	역	(만원)	지	급 내	역	(만원)	
부락명	· 총세 대	금액		Α (A (297)		B(180)		С		D	
	"	세대	금 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석문면	3,539	2,319	120,700	91	18,200	41	4,100	111	7,102	2,076	91,298	
신평면	4,374	430	66,000	376	61,877	0	0	54	4,123	0	0	
송악면	6,212	437	49,900	414	47,405	23	2,495	0	0	0	0	
송산면	3,939	7,289	19,025	1,140	4,492	3,317	10,569	1,458	2,863	1,374	1,101	
계	18,064	10,475	255,625	2,021	131,974	3,381	17,164	1,623	14,088	3,450	92,399	

2. 사회경제적 현황

1) 태안군

□ 인구현황

○ 태안군은 8개 읍면, 총 10,169세대에 인구 63,0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안군 전체 인구 중 약 42.3%가 태안읍에서 거주하고 있다.

〈표 5-9〉태안군 인구분포

(단위:명, 세대)

구 분		총인구		세대수	
⊤ ਦ	전체	남성	여성	게네ㅜ	
전 체	63,042	31,670	31,372	10,169	
태안읍	26,676	13,440	13,236	4,221	
안면읍	9,649	4,828	4,821	1,221	
고남면	2,736	1,339	1,397	1,201	
남 면	4,464	2,237	2,227	1,922	
근흥면	6,013	3,058	2,955	2,582	
소원면	6,171	3,073	3,098	2,558	
원북면	4,899	2,477	2,422	2,085	
이원면	2,434	1,218	1,216	1,00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www.kosis.kr),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연령별 인구분포

○ 태안군은 <표 5-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4%로 나타내고 있다. <표 5-11>의 65 이상 노인은 19.3%로 고령화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읍단 위보다 면단위로 갈수록 고령화수준이 높았다.

〈표 5-10〉 태안군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명, %)

구분	~10세 미만 10		10~30세	미만	30~50서	미만	50~70세미만		70세 이상		계	
一七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5,129	8.1	14,296	22.7	17,518	27.8	18,416	29.2	7,683	12.2	63,042	100
태안읍	2,912	10.9	7,102	26.6	8,646	32.4	5,849	21.9	2,167	8.1	26,676	100
안면읍	700	7.3	1,954	20.3	2,565	26.6	3,243	33.6	1,187	12.3	9,649	100
고남면	164	6.0	508	18.6	650	23.8	958	35.0	456	16.7	2,736	100
남 면	208	4.7	906	20.3	1,052	23.6	1,609	36.0	689	15.4	4,464	100
근흥면	356	5.9	1,219	20.3	1,514	25.2	2,070	34.4	854	14.2	6,013	100
소원면	319	5.2	1,213	19.7	1,418	23.0	2,216	35.9	1,005	16.3	6,171	100
원북면	368	7.5	972	19.8	1,147	23.4	1,586	32.4	826	16.9	4,899	100
이원면	102	4.2	422	17.3	526	21.6	885	36.4	499	20.5	2,434	100

〈표 5-11〉 태안군 노인인구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전기년 (65~75세		후기노인 (75세 이상)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63,042	12,190	19.3	8,110	12.9	4,080	6.5	
태안읍	26,676	3,368	12.6	2,246	8.4	1,122	4.2	
안면읍	9,649	1,937	20.1	1,255	13.0	682	7.1	
고남면	2,736	718	26.2	481	17.6	237	8.7	
남 면	4,464	1,130	25.3	758	17.0	372	8.3	
근흥면	6,013	1,361	22.6	913	15.2	448	7.5	
소원면	6,171	1,609	26.1	1,101	17.8	508	8.2	
원북면	4,899	1,293	26.4	853	17.4	440	9.0	
이원면	2,434	774	31.8	503	20.7	271	11.1	

□ 어업현황

○ 태안군의 어업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소원면, 근흥면, 안면읍이 높은 어업세대가 있어서, 전체의 55%수준이다. 즉, 전체 3,421세대에 8,634명이 분포되어 있다.

〈표 5-12〉태안군 어업인구분포

(단위 : 세대/명)

구분		어업 세대		어업 인구				
一七	계	전업	겸업	계	남	녀		
전체	3,421	589	2,832	8,634	4,158	4,476		
태안읍	134	39	95	423	199	224		
안면읍	520	52	468	1,306	628	678		
고남면	416	<i>7</i> 7	339	987	469	518		
남 면	298	67	231	748	369	379		
근흥면	600	195	405	1,573	772	801		
소원면	745	92	653	1,890	898	992		
원북면	254	39	215	548	259	289		
이원면	454	28	426	1,159	564	595		

□ 지역산업 현황

(1) 산업별 현황

○ 태안군의 산업별 분포에 있어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35.6%, 도소매 2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5-13〉 태안군 산업별 현황

(단위 : 개, %)

7.8	사업체	현황	종사지	· 현황
구분	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농업 및 임업	4	0.09	32	0.20
어업	4	0.09	14	0.09
광업	32	0.70	124	0.79
제조업	223	4.87	651	4.16
전기/가스/수도사업	4	0.09	915	5.84
건설업	130	2.84	821	5.24
도소매업	1,213	26.51	2,583	16.50
숙박 및 음식점업	1,629	35.60	3,781	24.15
운수업	235	5.14	582	3.72
통신업	19	0.42	176	1.12
금융 및 보험업	53	1.16	488	3.12
부동산 및 임대업	85	1.86	178	1.14
사업 및 서비스업	53	1.16	631	4.0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44	0.96	1,366	8.73
교육서비스업	121	2.64	1,294	8.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8	1.92	572	3.6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5	2.73	381	2.43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14	11.23	1,067	6.82
계	4,576	100	15,656	100

(2) 지역 특화사업

① 바다목장사업

- 새로운 어업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생태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생산하는 환경친 화적인 양식어업으로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다.
- 바다목장이란 새로운 어업생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상태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생산하는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업으로 해양과학 기술을 접목시켜 생존에 적합한 어장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어업방식이다. 먼저, 자연그대로의 청정해역에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등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 그리고 치어(새끼고기) 때부터 '음향급이기'를 통해 먹이를 줄 때마다 동일한 음파를 보내어, 조건반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훈련시켜 정착을 유도. 관측기기를 설치하여 수온이나 기타 오염여부를 측정, 목장주변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 연안어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세계의 많은 연안국가들에서 연안자원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는 기르는어업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설 투자. 1970년대부터 수산자원조성을위하여 인공어초시설과 대하, 우럭, 광어 등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새로운 양식어업을 통해 수산물 증대 및 환경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② 태안읍 육성사업종합계획도 (소도읍육성사업)

○ "꿀벌이 벌통으로 꿀을 모으듯 관광객이 개별관광지(꽃:해안)를 다니고 거점관광도시 (꿀벌통:태안읍)에 집중되도록 관광기능을 지원하는 배후도시이며, 거점관광도시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휘자이고, 연계된 관광지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 하다.

- 허니포트형(Honeypot) 거점 관광도시 추진 전략
 - 매력있는 내륙관광 중심도시 육성전략
 - 해안관광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삶의 질 향상 전략

③ 태안군 종합에너지 단지 조성사업

○ 차별화된 아이템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상대 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원북면과 이원면 일원 이원간척지구인근의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6종(바이오디젤, 풍력발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지홍보관)을 단지화하여 세계 유일의 종합 에너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④ 관광레저사업

○ 정주기능과 관광기능(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숙박업)을 기본기능으로 갖추고,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스포츠, 휴양, 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선택적으로 개발되는 도시

⑤ 지역 특산품

○ 태안의 명물 육쪽마늘, 안면도 고추, 느타리버섯, 까나리 액젖, 해선 김, 송화소금, 해옥(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파도리 해수욕장 해변에서 생산되는 자 연석 조약돌), 생강, 달래, 검정콩, 갯바람아래 쌀 등의 특산품 생산

2) 보령시

□ 인구현황

○ 보령시는 16개 읍면동, 총 43,071세대에 인구 107,6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령 시 읍내의 대천 5개동에 전체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표 5-14〉 보령시 인구분포

(단위:명, 세대)

그 님		총인구		세대수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세내구
전 체	107,637	54,426	53,211	43,071
웅천읍	7,828	3,962	3,866	3,354
주포면	1,939	1,045	894	905
주교면	5,967	3,107	2,860	2,361
오천면	4,372	2,300	2,072	2,581
천북면	3,413	1,652	1,761	1,857
청소면	4,816	2,454	2,362	1,469
청라면	6,094	3,060	3,034	2,031
남포면	3,230	1,598	1,632	2,551
주산면	2,127	1,076	1,051	1,458
미산면	3,118	1,582	1,536	990
성주면	5,928	3,132	2,796	1,265
대천1동	17,447	8,762	8,685	6,284
대천2동	7,909	3,938	3,971	2,975
대천3동	11,231	5,626	5,605	4,273
대천4동	14,404	7,067	7,337	5,349
대천5동	7,814	4,065	3,749	3,368

□ 연령별 인구분포

○ 보령시는 <표 5-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세 이상 인구가 35%를 상회하고 있다. 또 한 <표 5-16>에서와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6.6%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5-15〉 보령시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명, %)

구분	~10세	미만	10~30세	미만	30~50서	미만	50~70서	미만	70세 여	이상	계	
1 1	인원	%	인원	%								
전체	10,310	9.6	26,893	25.0	32,064	29.8	26,822	24.9	11,548	10.7	107,637	100
웅천읍	423	5.4	1,820	23.2	1,921	24.5	2,404	30.7	1,260	16.1	7,828	100
주포면	110	5.7	466	24.0	530	27.3	530	27.3	303	15.6	1,939	100
주교면	419	7.0	1,266	21.2	1,581	26.5	1,859	31.2	842	14.1	5,967	100
오천면	251	5.7	966	22.1	1,069	24.5	1,338	30.6	748	17.1	4,372	100
천북면	202	5.9	643	18.8	737	21.6	1,102	32.3	729	21.4	3,413	100
청소면	302	6.3	1,006	20.9	1,139	23.7	1,565	32.5	804	16.7	4,816	100
청라면	365	6.0	1,322	21.7	1,507	24.7	1,830	30.0	1,070	17.6	6,094	100
남포면	172	5.3	605	18.7	652	20.2	1,099	34.0	702	21.7	3,230	100
주산면	91	4.3	441	20.7	433	20.4	697	32.8	465	21.9	2,127	100
미산면	233	7.5	777	24.9	900	28.9	932	29.9	276	8.9	3,118	100
성주면	371	6.3	1,537	25.9	1,711	28.9	1,633	27.5	676	11.4	5,928	100
대천1동	2,509	14.4	4,825	27.7	6,068	34.8	3,098	17.8	947	5.4	17,447	100
대천2동	915	11.6	2,143	27.1	2,597	32.8	1,733	21.9	521	6.6	7,909	100
대천3동	1,297	11.5	3,170	28.2	3,810	33.9	2,258	20.1	696	6.2	11,231	100
대천4동	2,053	14.3	3,952	27.4	5,093	35.4	2,494	17.3	812	5.6	14,404	100
대천5동	597	7.6	1,954	25.0	2,316	29.6	2,250	28.8	697	8.9	7,814	100

〈표 5-16〉 보령시 노인인구분포

(단위 : 명, %)

	(Еп. 8, 70)									
		65세	이삿	전기	_	후기	_			
구분	전체인구			(65~75×	Ⅱ 미만)	(75세	이상)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107,637	17,916	16.6	11,677	10.8	6,239	5.8			
웅천읍	7,828	1,869	23.9	1,153	14.7	716	9.1			
주포면	1,939	415	21.4	249	12.8	166	8.6			
주교면	5,967	1,307	21.9	856	14.3	451	7.6			
오천면	4,372	1,106	25.3	703	16.1	403	9.2			
천북면	3,413	1,074	31.5	674	19.7	400	11.7			
청소면	4,816	1,242	25.8	825	17.1	417	8.7			
청라면	6,094	1,592	26.1	976	16.0	616	10.1			
남포면	3,230	1,032	32.0	637	19.7	395	12.2			
주산면	2,127	686	32.3	433	20.4	253	11.9			
미산면	3,118	520	16.7	394	12.6	126	4.0			
성주면	5,928	1,092	18.4	764	12.9	328	5.5			
대천1동	17,447	1,497	8.6	1,003	5.7	494	2.8			
대천2동	7,909	917	11.6	659	8.3	258	3.3			
대천3동	11,231	1,114	9.9	717	6.4	397	3.5			
대천4동	14,404	1,264	8.8	802	5.6	462	3.2			
대천5동	7,814	1,189	15.2	832	10.6	357	4.6			

□ 어업현황

○ 보령시의 어업세대는 총 2,342세대로 5,9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천면과 주교 면이 전체 어업세대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표 5-17〉보령시 어업인구분포

(단위 : 세대/명)

구분		어업 세대			어업 인구	<u>'</u>
— T 亚	계	전업	겸엄	계	남	녀
전체	2,342	696	1,646	5,919	2,961	2,958
웅천읍	153	35	118	432	220	212
주교면	638	30	608	1,538	777	761
오천면	946	460	486	2,193	1,061	1,132
천북면	299	32	267	764	378	386
청소면	1	-	-	3	1	2
남포면	53	10	43	146	75	71
대천1동	17	11	6	65	32	33
대천2동	16	9	7	56	32	24
대천3동	10	6	4	41	24	17
대천4동	9	6	3	28	16	12
대천5동	200	97	103	653	345	308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www.kosis.kr),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지역산업 현황

○ 보령시의 지역산업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 도소매업이 27%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관광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1) 산업 현황

〈표 5-18〉 보령시 산업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	현황	종사지	ት 현황
丁 铊	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농업 및 임업	11	0.14	106	0.37
어업	2	0.03	14	0.05
광업	6	0.08	95	0.33
제조업	594	7.80	3,401	11.81
전기/가스/수도사업	12	0.16	1,314	4.56
건설업	270	3.54	3,049	10.59
도소매업	2,059	27.02	4,759	16.53
숙박 및 음식점업	2,135	28.02	4,850	16.84
운수업	529	6.94	1,149	3.99
통신업	33	0.43	241	0.84
금융 및 보험업	71	0.93	1,003	3.48
부동산 및 임대업	141	1.85	455	1.58
사업 및 서비스업	93	1.22	536	1.8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75	0.98	1,586	5.51
교육서비스업	277	3.64	2,514	8.7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9	2.09	1,444	5.0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47	3.24	501	1.74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6	11.89	1,778	6.17
계	7,620	100	28,795	100

2) 지역특성화 사업

① 관광산업 육성

- 관광상품 브랜드화 : 보령시는 보령 8경 즉, 대천해수욕장, 무창포바닷길, 성주산휴양 림, 보령호, 오서산, 외연열도, 오천항, 월전죽도 등 보령의 대표 관광지 육성 지속적 인 관광마케팅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보령"을 슬로건으로 제시한다.
- 보령은 다양한 관관상품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대 표적인 축제로 보령머드축제, 보령천북굴축제, 해넘이축제, 무창포대하/전어축제, 무 창포주꾸미/도다리축제,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 성주산단풍축제 등을 들 수 있다.
- 특히 여름에는 보령머드축제가 개최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령머드」세계화를 위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머드의 상품화를 실시하여 머드 화장품, 머드비누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머드체험과 머드축제를 통하여 광고효과를 보고 있다.

② 지역특산품

- 보령시의 특산품으로는 쌀과 어패류, 버섯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 만세보령 특미, 청전(靑田)오리쌀, 머드미(쌀), 푸른내음쌀, 남포·사현 포도, 양송이 버섯, 서양란(심비디움), 고내미 전통장, 곰내골 잡곡, 까나리 액젓, 은행, 한방사과
 - 방울토마토, 배, 딸기, 꽃게, 주꾸미, 키조개, 전북 굴, 대하, 전어, 맛김, 김치, 고춧가루, 은행 한과, 땅두릅, 산채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버섯한우, 보령 전복

3) 서산시

□ 인구현황

○ 서산시는 15개 읍면동, 총 59,440세대에 인구 153,5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산시의 5개 동의 인구가 전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산읍은 10.8%가 분포하고 있다.

〈표 5-19〉 서산시 인구분포

(단위:명, 세대)

7 13		총인구		계레스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세대수
전체	153,569	77,996	75,573	59,440
대산읍	16,599	8,720	7,879	6,186
인지면	7,620	3,878	3,742	2,939
부석면	6,340	3,247	3,093	2,615
팔봉면	3,480	1,757	1,723	1,492
지곡면	4,823	2,503	2,320	2,028
성연면	3,085	1,557	1,528	1,242
음암면	9,917	5,14 4	4,773	3,828
운산면	5,810	2,964	2,846	2,512
해미면	8,484	4,407	4,077	3,730
고북면	8,535	4,310	4,225	3,219
부춘동	18,848	9,463	9,385	7,195
동문동	20,888	10,542	10,346	7,739
활성동	5,138	2,531	2,607	2,329
수석동	13,991	6,882	7,109	5,345
석남동	20,011	10,091	9,920	7,041

□ 연령별 인구분포

○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29% 수준이며, 특히 면단위에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13.7%로 다른 서해안지역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5-20〉 서산시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명, %)

구분	~10세 미만		·10세 미만 10~30세미만		30~50세	30~50세미만		50~70세 미만		기상	계	
,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18,552	12.1	40,152	26.1	50,295	32.8	30,935	20.1	13,635	8.9	153,569	100
대산읍	2,045	12.3	4,629	27.9	5,817	35.0	2,853	17.2	1,255	7.6	16,599	100
인지면	1,090	14.3	1,656	21.7	2,519	33.1	1,548	20.3	807	10.6	7,620	100
부석면	299	4.7	1,299	20.5	1,449	22.9	2,163	34.1	1,130	17.8	6,340	100
팔봉면	133	3.8	689	19.8	740	21.3	1,257	36.1	661	19.0	3,480	100
지곡면	299	6.2	1,138	23.6	1,271	26.4	1,352	28.0	763	15.8	4,823	100
성연면	208	6.7	664	21.5	<i>7</i> 76	25.2	889	28.8	548	17.8	3,085	100
음암면	1,240	12.5	2,488	25.1	3,076	31.0	2,072	20.9	1,041	10.5	9,917	100
운산면	374	6.4	1,177	20.3	1,429	24.6	1,833	31.5	997	17.2	5,810	100
해미면	609	7.2	2,079	24.5	2,383	28.1	2,357	27.8	1,056	12.4	8,484	100
고북면	1,088	12.7	1,912	22.4	2,431	28.5	2,075	24.3	1,029	12.1	8,535	100
부춘동	2,937	15.6	5,273	28.0	7,081	37.6	2,670	14.2	887	4.7	18,848	100
동문동	2,942	14.1	6,030	28.9	7,373	35.3	3,430	16.4	1,113	5.3	20,888	100
활성동	406	7.9	1,406	27.4	1,603	31.2	1,290	25.1	433	8.4	5,138	100
수석동	1,673	12.0	4,187	29.9	4,951	35.4	2,379	17.0	801	5.7	13,991	100
석남동	3,209	16.0	5,525	27.6	7,396	37.0	2,767	13.8	1,114	5.6	20,011	100

〈표 5-21〉 서산시 노인인구분포

(단위:명, %)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전기년 (65~75세	_	후기년 (75세 ·	_
,	2 , 2 ,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153,569	21,002	13.7	13,706	8.9	7,296	4.8
대산읍	16,599	1,833	11.0	1,132	6.8	701	4.2
인지면	7,620	1,257	16.5	822	10.8	435	5.7
부석면	6,340	1,721	27.1	1,132	17.9	589	9.3
팔봉면	3,480	993	28.5	642	18.4	351	10.1
지곡면	4,823	1,129	23.4	715	14.8	414	8.6
성연면	3,085	800	25.9	509	16.5	291	9.4
음암면	9,917	1,604	16.2	1,086	11.0	518	5.2
운산면	5,810	1,564	26.9	1,072	18.5	492	8.5
해미면	8,484	1,686	19.9	1,111	13.1	575	6.8
고북면	8,535	1,654	19.4	1,111	13.0	543	6.4
부춘동	18,848	1,433	7.6	931	4.9	502	2.7
동문동	20,888	1,722	8.2	1,091	5.2	631	3.0
활성동	5,138	676	13.2	444	8.6	232	4.5
수석동	13,991	1,240	8.9	804	5.7	436	3.1
석남동	20,011	1,690	8.4	1,104	5.5	586	2.9

□ 어업현황

○ 어업세대는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2〉서산시 어업인구분포

(단위 : 세대/명)

구분		어업 세대			어업 인구	
ੀ ਦ	계	전업	겸엄	계	남	녀
전체	952	167	785	2,471	1,179	1,292
대산읍	371	46	325	945	454	491
인지면	1	-	_	3	2	1
부석면	96	32	64	277	138	139
팔봉면	170	27	143	404	186	218
지곡면	294	54	240	766	369	397
음암면	1	-	-	2	-	-
부춘동	5	3	2	21	9	12
동문동	2	-	-	6	2	4
수석동	3	1	2	8	5	3
성남동	9	3	6	39	13	26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www.kosis.kr),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지역산업 현황

(1) 산업 현황

○ 서산시의 산업현황 조사결과, 도소매업 27.8%,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8% 순으로 높았다. 또한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도 12.78%로 나타났다.

〈표 5-23〉 서산시 산업별 현황

(단위:개,%)

(E11 · 71, 70)									
구분	사업체	현황	종사지	· 현황					
ੀ ਦ	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농업 및 임업	17	0.18	341	0.81					
광업	29	0.31	129	0.31					
제조업	620	6.69	10,303	24.60					
전기/가스/수도사업	11	0.12	443	1.06					
건설업	297	3.20	2,537	6.06					
도소매업	2,577	27.80	6,229	14.87					
숙박 및 음식점업	2,207	23.81	5,258	12.55					
운수업	721	7.78	1,830	4.37					
통신업	35	0.38	335	0.80					
금융 및 보험업	124	1.34	1,479	3.53					
부동산 및 임대업	268	2.89	715	1.71					
사업 및 서비스업	188	2.03	1,410	3.3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7	0.72	1,935	4.62					
교육서비스업	401	4.33	3,944	9.4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19	2.36	1,929	4.6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03	3.27	595	1.4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85	12.78	2,470	5.90					
계	9,269	100	41,882	100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www.kosis.kr),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2) 지역 특성화 사업

가. 관광산업 육성

○ 서산은 한반도와 중서부,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며 동편으로는 홍성군, 예산군, 당진 군, 서편으로는 태안군과 서해안에 접해있다. 면적 739.46k㎡의 광활한 평야와 저산성 구릉지대로써 서해안개발과 더불어 개발 잠재력이 큰 도시이다.

- 서산 8경 : 부춘산 나무꾼의 피리소리, 명림산 골짜기의 빨래소리, 도비산의 저녁노을, 상왕산의 비 개인 달, 삼선암의 저녁 종소리, 연당(현재분수대)에 내리는 보슬비, 덕지 천 포구에 돌아오는 배, 양유정에 자옥한 연기
- 농어촌체험마을 : 6쪽 마늘 체험, 감자캐기 체험, 농산물 수확 재배법 및 시식체험, 농촌생활 체험, 생강한과 체험, 오학리 별마을 체험, 웅도 어리굴젓 체험, 전통 농・ 어촌마을 체험 - 바다체험, 홍화환만들기, 두부, 김장체험, 회포마을 팜스테이
- 삼길포해상관광 : 삼길포 유람선은 삼길포를 출발하여 대산항과 임해공단을 비롯한 크고 작은 유무인도를 구경하는 코스로 관광객의 인기가 높음. 또한 여름철이면 삼길 포와 당진군 난지도를 연결하는 항로가 열려 관광객의 뱃길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한다.
- 지역축제 :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 6쪽 마늘 축제, 팔봉산 감자캐기 축제,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 서산천수만 세계철새 기행전, 안견문화제, 국화축제, 서산간월도 바다 음식 축제

나. 지역특산품

- 서산시는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 지역특산품으로 서산쌀, 서산 6년근 인삼, 팔봉산 감자, 서산 6쪽 마늘, 고북 알타리 무, 어리굴젓, 낙지, 양난, 서산생강

4) 서천군

□ 인구현황

○ 서천군은 13개 읍면, 총 25,648세대에 인구 61,16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천군은 장 항읍, 서천읍 및 마서면 등의 순으로 높은 인구분포율을 나타낸다.

〈표 5-24〉 서천군 인구분포

(단위:명, 세대)

7 11		총인구		게레스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세대수
전 체	61,168	30,269	30,899	25,648
장항읍	14,096	7,058	7,038	5,760
서천읍	13,627	6,789	6,838	5,147
마서면	6,541	3,252	3,289	2,768
화양면	3,005	1,465	1,540	1,334
기산면	2,115	1,029	1,086	960
한산면	3,296	1,614	1,682	1,472
마산면	1,764	860	904	788
시초면	1,503	718	785	<i>7</i> 51
문산면	1,546	737	809	729
판교면	2,448	1,189	1,259	1,150
종천면	2,516	1,202	1,314	1,100
비인면	3,745	1,838	1,907	1,653
서면	4,966	2,518	2,448	2,036

□ 연령별 인구분포

○ 서천군은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45%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표 5-26>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4.4%의 높은 노인인구율을 나타내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5-25〉 서천군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명, %)

구분	~10세 기	미만	10~30서	미만	30~50서	미만	50~70세	미만	70세 여	이상	계	
1 1	인원	%	인원	%								
전체	4,596	7.5	13,216	21.6	15,406	25.2	17,845	29.2	10,105	16.5	61,168	100
장항읍	1,315	9.3	3,365	23.9	4,123	29.2	3,791	26.9	1,502	10.7	14,096	100
서천읍	1,410	10.3	3,543	26.0	4,059	29.8	3,124	22.9	1,491	10.9	13,627	100
마서면	439	6.7	1,256	19.2	1,545	23.6	2,048	31.3	1,253	19.2	6,541	100
화양면	112	3.7	540	18.0	554	18.4	1,030	34.3	769	25.6	3,005	100
기산면	97	4.6	375	17.7	413	19.5	684	32.3	546	25.8	2,115	100
한산면	173	5.2	648	19.7	665	20.2	1,088	33.0	722	21.9	3,296	100
마산면	91	5.2	313	17.7	349	19.8	595	33.7	416	23.6	1,764	100
시초면	62	4.1	219	14.6	251	16.7	512	34.1	459	30.5	1,503	100
문산면	64	4.1	232	15.0	281	18.2	586	37.9	383	24.8	1,546	100
판교면	90	3.7	429	17.5	444	18.1	844	34.5	641	26.2	2,448	100
종천면	146	5.8	466	18.5	537	21.3	826	32.8	541	21.5	2,516	100
비인면	190	5.1	796	21.3	862	23.0	1,176	31.4	721	19.3	3,745	100
서면	407	8.2	1,034	20.8	1,323	26.6	1,541	31.0	661	13.3	4,966	100

〈표 5-26〉 서천군 노인인구분포

(단위:명, %)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전기년 (65~75세	_	후기노인 (75세 이상)		
, _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61,168	14,954	24.4	9,183	15.0	5,771	9.4	
장항읍	14,096	2,408	17.1	1,611	11.4	797	5.7	
서천읍	13,627	2,212	16.2	1,342	9.8	870	6.4	
마서면	6,541	1,801	27.5	1,066	16.3	735	11.2	
화양면	3,005	1,121	37.3	698	23.2	423	14.1	
기산면	2,115	781	36.9	469	22.2	312	14.8	
한산면	3,296	1,062	32.2	665	20.2	397	12.0	
마산면	1,764	621	35.2	380	21.5	241	13.7	
시초면	1,503	662	44.0	396	26.3	266	17.7	
문산면	1,546	568	36.7	326	21.1	242	15.7	
판교면	2,448	909	37.1	542	22.1	367	15.0	
종천면	2,516	<i>7</i> 55	30.0	437	17.4	318	12.6	
비인면	3,745	1,030	27.5	593	15.8	437	11.7	
서면	4,966	1,024	20.6	658	13.3	366	7.4	

□ 어업현황

○ 서천군의 어업세대 및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마서면, 서면, 비인면 순으로 높은 어업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표 5-27〉 서천군 어업인구분포

(단위 : 세대/명)

구분		어업 세대		어업 인구			
। स	계	전업	겸업	계	남	여	
전체	1,298	444	854	3,567	1,788	1,779	
장항읍	277	133	144	726	363	363	
서천읍	14	5	9	54	26	28	
마서면	414	93	321	1,084	540	544	
화양면	4	2	2	11	6	5	
마산면	1	_	_	4	3	1	
종천면	96	16	80	235	114	121	
비인면	161	40	121	462	232	230	
서면	331	154	177	991	504	487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www.kosis.kr),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지역산업 현황

(1) 산업 현황

○ 서천군의 지역별 산업현황 조사결과, 도소매업 31.49%,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도 14.72%로 나타났다.

〈표 5-28〉 서천군 산업별 현황

(단위 : 개, %)

713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구분	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농업 및 임업	10	0.22	374	2.21	
어업	1	0.02	8	0.05	
광업	4	0.09	64	0.38	
제조업	424	9.40	3,904	23.10	
전기/가스/수도사업	6	0.13	412	2.44	
건설업	138	3.06	975	5.77	
도소매업	1,420	31.49	2,517	14.90	
숙박 및 음식점업	939	20.82	1,876	11.10	
운수업	253	5.61	754	4.46	
통신업	25	0.55	192	1.14	
금융 및 보험업	38	0.84	512	3.03	
부동산 및 임대업	84	1.86	138	0.82	
사업 및 서비스업	63	1.40	527	3.1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58	1.29	1,055	6.24	
교육서비스업	176	3.90	1,329	7.8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2	2.48	822	4.8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95	2.11	179	1.06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64	14.72	1,259	7.45	
계	4,510	100	16,897	100	

(2) 지역특성화 사업

① 어메니티서천

- 어메니티서천 : 쾌적한 환경, 매력있는 자연환경, 풍요로운 서천사람의 삶을 지향하며, 전통과 현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정책, 농수산 임업을 포함한 현대 산업 시설을 수용한 경제발전 정책, 지역특산물의 대외적 차별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 지역개발 정책으로 인간생활의 신(新) 패러다임 (Paradigm)을 서천에 실현하고자 하는 서천군의 모토(Motto)이다. 서천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전 · 관리하고 지역개발로 인한 자연과 문화의 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개발정책으로 인간과 자연과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조화롭고 개성 있는 서천 사회 건설을 통하여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전승, 최적의 자연환경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생활환경, 경제환경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 관광자원: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축제인 한산모시문화제를 비롯한 홍원항 전어 큰 잔치, 동백꽃ㆍ주꾸미 축제, 마량포 해돋이 축제 등이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음. 철새의 낙원인 금강하구둑, 영화 JSA(공동경비구역)의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신성리갈대밭, 바다의 생명인 갯벌과 완만한 경사면과 아카시아와 해송림이 우거진 춘장대해수욕장 등 연인과 가족의 휴양지로, 갯벌 체험을 중심으로 농촌생활 체험 등 체험관광지로 다양한 테마관광이 군내에 활성화 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② 지역특산품

○ 서천군의 지역특산품으로는 한산의 특산품과 서면 등 서해안 인근지역의 해태양식 특산품으로 다음과 같다. - 한산세모시, 한산소곡주, 지하젓, 공작선, 도투리묵, 서천단감, 갈꽃비, 까나리액젓, 서천쌀, 서천김, 꽃새우, 죽염장, 버섯, 청국장

5) 홍성군

□ 인구현황

○ 홍성군은 11개 읍면, 총 35,196세대에 인구 88,68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홍성군은 홍성읍에 전체 인구의 46%가 거주하고 있으면, 광천읍이 13.3% 거주하고 있다.

〈표 5-29〉홍성군 인구분포

(단위 : 명, 세대)

7. 19		비리스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세대수
전체	88,685	44,109	44,576	35,196
홍성읍	40,762	20,163	20,599	15,349
광천읍	11,840	5,915	5,925	4,858
홍북면	5,303	2,665	2,638	2,114
금마면	4,103	2,067	2,036	1,743
홍동면	4,153	2,133	2,020	1,608
장곡면	3,764	1,855	1,909	1,648
은하면	3,030	1,534	1,496	1,241
결성면	2,736	1,358	1,378	1,172
서부면	3,958	1,886	2,072	1,651
갈산면	4,495	2,229	2,266	1,855
구항면	4,541	2,304	2,237	1,957

□ 연령별 인구분포

○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38%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홍성읍을 제외하고는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9%이며, 특히 홍성읍 9.9%를 제외하고는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나타낸다.

〈표 5-30〉홍성군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명, %)

구분	~10세 기	미만	10~30세미만		30~50세미만		50~70세 미만		70세 이상		계	
, _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8,127	9.2	21,585	24.3	25,376	28.6	22,374	25.2	11,223	12.7	88,685	100
홍성읍	5,343	13.1	11,234	27.6	14,181	34.8	7,437	18.2	2,567	6.3	40,762	100
광천읍	743	6.3	2,821	23.8	3,024	25.5	3,597	30.4	1,655	14.0	11,840	100
홍북면	394	7.4	1,154	21.8	1,340	25.3	1,549	29.2	866	16.3	5,303	100
금마면	182	4.4	868	21.2	889	21.7	1,344	32.8	820	20.0	4,103	100
홍동면	239	5.8	936	22.5	947	22.8	1,233	29.7	798	19.2	4,153	100
장곡면	208	5.5	652	17.3	723	19.2	1,285	34.1	896	23.8	3,764	100
은하면	119	3.9	601	19.8	625	20.6	1,001	33.0	684	22.6	3,030	100
결성면	128	4.7	540	19.7	597	21.8	868	31.7	603	22.0	2,736	100
서부면	184	4.6	855	21.6	898	22.7	1,290	32.6	731	18.5	3,958	100
갈산면	236	5.3	939	20.9	1,004	22.3	1,465	32.6	851	18.9	4,495	100
구항면	351	7.7	985	21.7	1,148	25.3	1,305	28.7	752	16.6	4,541	100

〈표 5-31〉홍성군 노인인구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전기년 (65~75세	_	후기노인 (75세 이상)	
1 4	વળાય!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88,685	17,006	19.2	11,076	12.5	5,930	6.7
홍성읍	40,762	4,037	9.9	2,619	6.4	1,418	3.5
광천읍	11,840	2,606	22.0	1,700	14.4	906	7.7
홍북면	5,303	1,298	24.5	860	16.2	438	8.3
금마면	4,103	1,191	29.0	784	19.1	407	9.9
홍동면	4,153	1,145	27.6	755	18.2	390	9.4
장곡면	3,764	1,341	35.6	888	23.6	453	12.0
은하면	3,030	990	32.7	619	20.4	371	12.2
결성면	2,736	891	32.6	578	21.1	313	11.4
서부면	3,958	1,108	28.0	691	17.5	417	10.5
갈산면	4,495	1,301	28.9	870	19.4	431	9.6
구항면	4,541	1,098	24.2	712	15.7	386	8.5

□ 어업현황

○ 홍성군은 서부면이 전체의 95%를 넘는 어업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표 5-32〉 서산시 어업인구분포

(단위 : 세대/명)

구분		어업 세대		어업 인구			
一下亚	계	전업	겸엄	계	남	녀	
전체	317	76	241	892	408	484	
홍성읍 광천읍 결석면	2	-	-	5	3	2	
광천읍	3	1	2	11	6	5	
결석면	7	2	5	21	9	12	
서부면	305	72	233	855	390	465	

□ 지역산업 현황

(1) 산업 현황

○ 홍성군의 산업현황 조사결과, 도소매업 31.56%,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도 13.01%로 나타났다.

〈표 5-33〉 서산시 산업별 현황

(단위 : 개, %)

그범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구분	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농업 및 임업	15	0.25	179	0.81	
광업	3	0.05	33	0.15	
제조업	483	7.98	3,365	15.14	
전기/가스/수도사업	4	0.07	77	0.35	
건설업	178	2.94	840	3.78	
도소매업	1,909	31.56	4,333	19.50	
숙박 및 음식점업	1,255	20.75	2,839	12.78	
운수업	381	6.30	744	3.35	
통신업	26	0.43	379	1.71	
금융 및 보험업	82	1.36	1,231	5.54	
부동산 및 임대업	228	3.77	404	1.82	
사업 및 서비스업	97	1.60	439	1.9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55	0.91	1,535	6.91	
교육서비스업	247	4.08	2,578	11.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5	2.23	1,107	4.9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64	2.71	366	1.65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87	13.01	1,772	7.97	
계	6,049	100	22,221	100	

(2) 지역특성화 사업

① 관광산업 육성

○ 홍성군은 홍성8경 즉, 용봉산, 홍주성과 여하정, 만해생가, 그림이 있는 정원(매현농원), 오서산, 남당항,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 궁리포구 등의 관광지를 두어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②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2006년 12월)

- 21세기 홍성의 지속성장가능의 홍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사업 : 지역정체성을 제고하는 도시개발 및 정비, 삶·휴양·산업이 조화된 농산어촌 개발 및 정비
 - 고부가가치형 지역경제 기반 구축사업: 미래지향적인 농림축수산업 육성, 혁신주도 형 전략산업 육성,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보망 확충: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내포문화 정체성을 제고하는 문화·관광 육성 사업: 개성있고 차별화된 문화기반 확충, 서해안 관광시대를 주도할 관광기반 구축
 -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사업: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의료 기반 확충,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사회 실현

-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사업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자연환경 관리, 사전 예방 중심의 생활환경 관리, 과학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③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산업육성과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에는 버섯따기, 고구마캐기, 감가캐기, 흑향미인절미만들기, 황 토염색, 솟대만들기, 유기농채소체험, 바지락캐기, 바다낚시, 산보고바다보고(1박코 스, 당일코스), 산나물캐기(1박코스, 당일코스), 녹색광광센터(펜션체험)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에는 김치담그기, 전통옹기체험 및 견학, 갈산체험, 거북이마을(1박코스, 당일코스)
 - 과수원체험프로그램에는 지장골복숭아, 방울토마토수확, 딸기따기, 복사꽃 구경하기, 영어농원체험, 환경농업봉사활동, 친환경과수체험
 - 홍성축제로는 내포사랑큰축제, 홍성남당항대하축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축제, 김좌 진장군전승기념백야축제

④ 지역특산품

○ 지역특산품으로 전통문화상품인 옹기쌀독, 농산물에는 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밤, 홍주골더덕, 유기농감자와 고구마, 지장골복숭아, 용봉산과수마을 사과와 배, 축산물에는 토굴새우젓

6) 당진군

□ 인구현황

○ 당진군은 12개 읍면, 총 56,874세대에 인구 136,25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진군은 당 진읍, 송악면, 신평면 순으로 높은 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5-34〉 당진군 인구분포

(단위:명, 세대)

7. 日		계리스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세대수
전체	136,254	69,647	66,607	56,874
당진읍	51,132	25,191	25,941	20,394
합덕읍	10,750	5,583	5,167	4,591
고대면	5,714	2,994	2,720	2,586
석문면	7,593	3,892	3,701	2,470
대호지면	2,787	1,436	1,351	1,251
정미면	3,818	1,930	1,888	1,930
면천면	3,675	1,911	1,764	1,594
순성면	6,035	3,078	2,957	2,460
우강면	6,203	3,151	3,052	2,546
신평면	12,190	6,272	5,918	4,937
송악면	18,004	9,646	8,358	8,335
송산면	8,353	4,563	3,790	3,780

□ 연령별 인구분포

○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32.5%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5.6%이다. 특히 당진읍과 송악면을 제외하고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표 5-35〉 당진군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명, %)

구분	~10세	미만	10~30서	미만	30~50세	미만	50~70세	미만	70세 여	기상	계	
11	인원	%	인원	%								
전체	14,310	10.5	35,808	26.3	41,898	30.7	30,493	22.4	13,745	10.1	136,254	100
당진읍	6,875	13.4	16,217	31.7	17,066	33.4	7,993	15.6	2,981	5.8	51,132	100
합덕읍	754	7.0	2,582	24.0	2,866	26.7	3,197	29.7	1,351	12.6	10,750	100
고대면	351	6.1	1,118	19.6	1,431	25.0	1,779	31.1	1,035	18.1	5,714	100
석문면	555	7.3	1,567	20.6	2,206	29.1	2,231	29.4	1,034	13.6	7,593	100
대호지 면	173	6.2	524	18.8	602	21.6	940	33.7	548	19.7	2,787	100
정미면	210	5.5	953	25.0	749	19.6	1,179	30.9	727	19.0	3,818	100
면천면	199	5.4	774	21.1	951	25.9	1,094	29.8	657	17.9	3,675	100
순성면	558	9.2	1,289	21.4	1,763	29.2	1,563	25.9	862	14.3	6,035	100
우강면	511	8.2	1,443	23.3	1,652	26.6	1,792	28.9	805	13.0	6,203	100
신평면	1,189	9.8	3,015	24.7	3,855	31.6	2,856	23.4	1,275	10.5	12,190	100
송악면	2,089	11.6	4,395	24.4	6,117	34.0	3,854	21.4	1,549	8.6	18,004	100
송산면	846	10.1	1,931	23.1	2,640	31.6	2,015	24.1	921	11.0	8,353	100

〈표 5-36〉 당진군 노인인구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전기년 (65~75세		후기년 (75세 ·	_도 인 이상)
·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136,254	21,301	15.6	14,123	10.4	7,178	5.3
당진읍	51,132	4,605	9.0	3,003	5.9	1,602	3.1
합덕읍	10,750	2,195	20.4	1,502	14.0	693	6.4
고대면	5 <i>,</i> 714	1,590	27.8	1,068	18.7	522	9.1
석문면	7,593	1,639	21.6	1,127	14.8	512	6.7
대호지면	2,787	807	29.0	496	17.8	311	11.2
정미면	3,818	1,090	28.5	682	17.9	408	10.7
면천면	3,675	958	26.1	599	16.3	359	9.8
순성면	6,035	1,331	22.1	886	14.7	445	7.4
우강면	6,203	1,267	20.4	859	13.8	408	6.6
신평면	12,190	1,912	15.7	1,267	10.4	645	5.3
송악면	18,004	2,464	13.7	1,687	9.4	777	4.3
송산면	8,353	1,443	17.3	947	11.3	496	5.9

□ 어업현황

○ 당진군의 어업세대는 석문면이 78.5%로 많은 어업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표 5-37〉 당진군 어업인구분포

(단위 : 세대/명)

구분	어업 세대			어업 인구		
一七	계	전업	겸엄	계	남	여
전체	2,165	207	1,958	5,795	2,805	2,990
당진읍	19	3	16	68	33	35
합덕읍	1	-	-	5	3	2
고대면	5		5	15	6	9
석문면	1 <i>,</i> 701	116	1,585	4,456	2,142	2,314
순성면	1	-	-	2	_	_
우강면	2	-	-	8	5	3
신평면	131	26	105	390	195	195
송악면	186	36	150	515	250	265
송산면	119	26	93	336	170	166

□ 지역산업 현황

(1) 산업 현황

○ 당진군의 산업현황 조사결과, 도소매업 27.95%,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도 12.2%로 나타났다.

〈표 5-38〉 당진군 산업별 현황

(단위: 개,%)

7.법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구분	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농업 및 임업	19	0.25	235	0.65	
광업	9	0.12	126	0.35	
제조업	620	8.14	10,211	28.08	
전기/가스/수도사업	9	0.12	936	2.57	
건설업	297	3.90	3,692	10.15	
도소매업	2,129	27.95	4,740	13.03	
숙박 및 음식점업	1,792	23.52	4,347	11.95	
운수업	521	6.84	1,216	3.34	
통신업	27	0.35	254	0.70	
금융 및 보험업	86	1.13	1,055	2.90	
부동산 및 임대업	272	3.57	632	1.74	
사업 및 서비스업	143	1.88	1,440	3.9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0	0.79	1,319	3.63	
교육서비스업	271	3.56	2,704	7.4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2	2.39	1,034	2.84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46	3.23	488	1.34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35	12.27	1,936	5.32	
계	7,618	100	36,365	100	

(2) 지역특성화 사업

① 관광산업 육성

- 유구한 문화유산과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심 그리고 아름다운 산천과 바다와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는 우리 당진군은 첨단 농업과 관광, 그리고 철강 공업과 항만 물류 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한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해나루쌀과 산소농법으로 생산되는 면천 꽈리고추, 동양최초의 함상공원과 7.3km의 우리나라 최대인 서해대교는 신관광 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 당진8경 : 왜목마을, 서해대교, 난지도해수욕장, 제방질주(방조제), 솔뫼성지, 도비도 해양체험, 함상공원, 아미망루

② 농어촌체험프로그램과 지역축제

- 짚토체험장 짚토공예 및 도자기 체험, 항진포구 갯벌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지역축제로 기지시줄다리기, 상록문화제, 진달래축제, 안섬풍어제, 대호지 4.4독립만 세운동추모제, 한진포구 바지락 축제, 삽교호 조개구이 축제, 면천 진달래민속축제, 장고항 실치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③ 지역특산품

○ 당진군은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 꽈리고추, 느타리버섯, 쪽파, 방울토마토, 호접난, 사과, 배, 포도, 감자,표고버섯, 밤호박, 당진뱅어포

3. 복지기관 현황

1) 태안군

□ 의료시설 현황

○ 태안군의 의료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39〉 태안군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50	
	병원	1	
민간의료기관	의원	30	
	요양병원	1	
	치과병원	11	
	계	23	
공공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1	
의료기관	보건지소	7	
	보건진료소	15	

자료: 태안군청, 2007년 통계연보

○ 태안군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0〉 태안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192	
	노	노인복지시설		생활인원 30명
	노인여가복 지시설	노인복지관	1	이용인원 250명
사회복지 시설		경로당	186	
1		노인교실	2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1	생활인원 30명
	장여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인원 13명

자료: 태안군청, 2007년 통계연보

2) 보령시

□ 의료시설 현황

○ 보령시의 의료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1〉 보령시 의료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65	
	병원	2	
 민간의료기관	의원	52	
인선취료기원 	요양병원	1	
	한방병원	1	
	치과병원	19	
	계	29	
공공 의료기관	보건소	1	
	보건지소	10	
	보건진료소	18	

자료: 보령시청, 2007년 통계연보

○ 보령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2〉 보령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7]	343	
	아동복	지시설	2	생활인원 94명
	노인복지시설		3	생활인원 83명
기취보기	장애인복지시설		2	생활인원 312명
사회복지 시설	노인여가	노인복지관	1	
1 - 1 -	복지시설	경로당	332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무료요양 1개
			3	무료전문요양 1개
				실비요양 1개

자료: 보령군청, 2007년 통계연보

3) 서산시

- □ 의료시설 현황
 - 서산시의 의료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3〉 서산시 의료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143	
	병원	1	* 비소이이
민간의료기관	의원	68*	* 부속의원 1개 포함
	한방병원	24	1/11 7 12
	치과병원	24	
	계	26	
공공	보건소	1	
의료기관	보건지소	10	
	보건진료소	15	

자료: 서산시청, 2007년 통계연보

○ 서산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4〉서산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424	
	보육시설	74	이용인원 4,079명
기위버리기기	아동복지시설	3	생활인원 115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2	생활인원 105명
	장애인복지시설	2	생활인원 186명
	경로당	343	이용인원 14,087명

자료: 서산시청, 2007년 통계연보

4) 서천군

□ 의료시설 현황

○ 서천군의 의료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5〉 서천군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55	
	병원	4*	* 트스 벼의
민간의료기관	의원	26	* 특수병원 1개 포함
	한방병원	15	2 1, 22
	치과병원	10	
	계	28	
공공 의료기관	보건소	1	
의료기관	보건지소	10	
	보건진료소	17	

자료: 서천군청, 2007년 통계연보

○ 서천군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6〉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보육시설	26	아동수 1,543명
	여성복지시설	1	생활인원 40명
사회복지시설	여성상담소	1	상담인원 44명(2006)
	노인복지시설	4	생활인원 121명
	장애인복지시설	2	생활인원 49명
	경로당	244	이용인원 9,211명

자료: 서천군청, 2007년 통계연보

5) 홍성군

- □ 의료시설 현황
 - 홍성군의 의료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7〉홍성군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75	
	병원	2	
	의원	41*	# 보 수 시 이
민간의료기관	요양병원	2	*부속의원 1개 포함
	한방병원	1	
	한의원	14	
	치과병원	15	
	계	24	
공공 의료기관	보건소	1	
의료기관	보건지소	10	
	보건진료소	14	

자료: 홍성군청, 2007년 통계연보

○ 홍성군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8〉 홍성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プ		445	
	아동복	지시설	1	생활인원 44명
	보육	시설	38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6	생활인원 157명
기위비리기			1	생활인원 202명
사회복지시 설	노인여가	경로당	329	
=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1	이용인원 230명
	노인주거/의료복	무료	2	이용인원 93명
	지시설	유료	4	이용인원 64명
	재가노인복지시설		1	이용인원 80명
	여성복지상담소		2	상담건수 430건

자료: 홍성군청, 2007년 통계연보

6) 당진군

- □ 의료시설 현황
 - 당진군의 의료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9〉 당진군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비고
	계	107	
	병원	4	
 민간의료기관	의원	56	
인신의료기선 	요양병원	1	
	한의원	18	
	치과병원	28	
	계	30	
공공 의료기관	보건소	1	
의료기관	보건지소	11	
	보건진료소	18	

○ 당진군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0〉 당진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비고(수용인원)	
	계			
	보	육시설	66	
	C	가동	4	지역아동센터 등
	장애인지원센터		3	
시청보기	노인복지회관		1	
사회복지 시설	ı AlHəl	무료시설	2	
1.5	노인복지 시설	유료시설	2	생활인원 68명
	ハラ 	실비시설	2	생활인원 52명
	재가노인복지시설		1	이용인원 80명 가정봉사자 22 명
	가족	가족 및 여성		

자료: 통계청, 2007, 당진사랑 네트워크 카페 : http://cafe350.daum.net/_c21

4. 교육기관 현황

1) 태안군

□ 교육기관 현황

○ 태안군의 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1〉 태안군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개)	학생 수	교직원 수
유치원	25	607	41
초등학교	20	3,841	269
중학교	8	1,906	160
고등학교	7	4,932	326
계	60	11,286	796

○ 태안군의 사설학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2〉태안군 사설학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개)	수강자 수(명)
직업기술분야	3	
국제실무분야	10	
경영실무분야	3	2.7/2
예능분야	30	2,762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13	
계	59	

자료: 통계청, 2007

2) 보령시

□ 교육기관 현황

○ 보령시의 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3〉 보령시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유치원	37	1,240	94
초등학교	29	7,638	455
중학교	13	3,935	271
고등학교	6	3,349	257
계	85	16,162	1,077

○ 보령시의 사설학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4〉 보령시 사설학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개)	수강자 수(명)
직업기술분야	14	
국제실무분야	9	
경영실무분야	5	4 002
예능분야	46	4,083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53	
계	127	

자료: 통계청, 2007

3) 서산시

□ 교육기관 현황

○ 서산시의 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5〉 서산시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유치원	39	1,809	109
초등학교	28	13,022	614
중학교	16	6,524	406
고등학교	7	4,932	326
대학/대학교	1	7,610	346
계	91	33,897	1,801

○ 서산시의 사설학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6〉서산시 사설학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개)	수강자 수(명)
직업기술분야	11	
국제실무분야	29	
인문사회분야	1	
경영실무분야	20	8,878
예능분야	95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69	
계	225	

자료: 통계청, 2007

3) 서천군

□ 교육기관 현황

○ 서천군의 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7〉 서천군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유치원	19	329	32
초등학교	18	3,630	260
중학교	9	1,858	154
고등학교	7	2,012	201
계	53	7,829	647

○ 서천군의 사설학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8〉 서천군 사설학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기관 수(개)	수강자 수(명)
직업기술분야	7	
국제실무분야	8	
경영실무분야	1	F 2/0
예능분야	34	5,369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31	
계	81	

자료: 통계청, 2007

5) 홍성군

□ 교육기관 현황

○ 홍성군의 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59〉 홍성군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유치원	30	607	51
초등학교	25	6,100	403
중학교	12	3,379	245
고등학교	8	3,335	279
대학/대학교/대학원	4	10,501	-
계	79	23,922	978

○ 홍성군의 사설학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60〉 홍성군 사설학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개)	수강자 수(명)
직업기술분야	11	
국제실무분야	10	
경영실무분야	1	7.010
예능분야	45	7,019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41	
계	108	

자료: 통계청, 2007

6) 당진군

- □ 교육기관 현황
 - 당진군의 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61〉 당진군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유치원	36	1,085	78
초등학교	32	9,074	509
중학교	12	4,591	279
고등학교	8	3,889	296
계	88	18,639	1,162

○ 당진군의 사설학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62〉 당진군 사설학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개)	수강자 수(명)
직업기술분야	10	
국제실무분야	10	
경영실무분야	2	0.100
예능분야	68	9,190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59	
계	148	

자료: 통계청, 2007

5.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유류피해지역 주민의 고령화

- 유류피해지역인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주민의 인구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의 인구가 약 36.8%이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18.4%로 나타나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넘어섰으며, 일부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 유류피해지역주민들의 인구분포가 고령화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인재육 성 방향을 모색하여야한다.

2) 유류피해지역 주민의 산업분포

- 유류피해지역주민들의 산업현황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전체 산업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관광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지역특화사업은 태안군은 바다목장사업, 태안읍 육성사업종합계획을 통한 관광지 개발, 종합에너지 단지 조성사업 등이며, 보령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 브랜드화 및 다양한 축제 개최가 있다. 서산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산8경, 농어촌체험마을, 삼길포해상관광, 지역 축제 등에 역점을 두며, 서천군은 「어메니티서천」이라는 모토아래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관광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홍성군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홍성8경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어촌 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당진군은 관광산업육성으로 당진 8경을 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어촌 체험프로그램과 지역축제 등이 있다.
- 유류피해지역의 주력 산업이 바다를 테마로 한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유류피해로 인 한 관광객 감소를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3) 유류피해지역의 복지기관 현황

- 유류피해지역의 의료시설은 의원급은 많은 편이나 병원급은 각 지역별 1개 혹은 2개 의 기관밖에 없으며,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유류피해지역은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경로당이 대부분이며, 다른 여가복지시설은 극 히 적은 편이다.
- 유류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

4) 유류피해지역의 교육기관 현황

- 유류피해지역의 교육기관은 대학교가 없는 지역이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이며, 사설학원은 각 분야별로 분포되어 있다.
- 유류피해지역의 교육기관 중 대학교가 없는 지역에 대해 충청남도 관내의 국립대학 과 연계한 연구 및 직업복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제 6 장 유류피해지역주민의 면접결과 분석

1. 유류피해지역주민의 면접결과 분석

1) 연구 참여자

○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면접 참여자는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은 어업, 공무원, 환경단체 직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8명과 여자 1명이며, 연령분포 42세~69세이다. 직업은 요식업, 환경단체 관련자, 어업, 공무원 등 다양하다.

〈표 6-1〉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지 역	성별	연령(만)	직업	기타
참여자 1	태안 만리포	남자	58세	요식업	이장
참여자 2	태안 신두리	남자	69세	환경감시원	
참여자 3	태안 신두리	남자	53세	어업・농업	이장
참여자 4	태안 신두리	남자	61세	어업・농업	
참여자 5	태안	여자	51세	공무원	계장
참여자 6	태안	남자	45세	공무원	계장
참여자 7	태안	남자	53세	공무원	재해대책본부
참여자 8	태안	남자	42세	환경단체	
참여자 9	태안	남자	60세	환경단체	

2) 내용 분석 결과

○ 연구 참여자의 면접결과를 내용 분석한 결과 8개 주제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① 피해주민을 위한 종합관리기구의 필요성

- 현재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은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경제 적, 심리적, 의료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는 유류피해로 생긴 생계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피해보상문제만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주민의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
 - 요번 유류사고는 천재지변이아니라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 주민들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복지센터 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생태계 복원과 주민들의 복지를 함께해야 한다.
 - 피해주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200억이 투자되었는데, 2008년까지만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며, 세부적인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하다. 만약이 전체적 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 피해지역에 대한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관광 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휴양타운 건설을 통한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 견도 제시하였다.
 - 지자체 및 중앙부처에서의 관광 상품의 개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사봉 등반대회 (해넘이 행사, 해돋이 행사 등)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만리포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축제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과 만리포간의 쾌속선 운행이 필요하다. 신두리와 모항간의 다리를 설치하여 먹거리와 숙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 삼성그룹차원에서 레저, 휴양, 워크숍 등 개최를 할 수 있는 휴양타운 건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③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

- 유류피해지역의 인구분포가 노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업체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피해주민 중에 노인이 많아서 새롭게 직업훈련을 하기는 힘들다. 기존의 사업, 예를 들면, 화훼사업이 발달되어 있으니 이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다. 또한 주변 펜션업소 등의 청소부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두리 지역에 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천연기념물을 이용한 특수작물 재배를 하면 좋겠다. 천리포 수목원과 연결하여 갯방풍9을 재배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갯방풍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지만 지원이 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피해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태안군은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태양열사업을 하고 있다. 태양열사업장 인 근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면, 이곳 화훼단지들은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로서는 태양열사업장 근처가 농지여서 이것을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 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 우리지역에서는 벼농사, 쪽마늘, 화훼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다.
- 태안바다의 수질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검증이 된 후에 어업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치어방류사업을 하면 좋겠다.
- 나는 굴양식으로 연간 2천만원 정도 수입을 얻었었다. 굴양식으로 연간 800만원정도 수입을 얻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수업이 없으니까 힘들다. 국가에서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서 약 10명 정도 된다. 나머지는 건강하지 못해서 일을 못한다. 굴양식장을 지금 철거 중인데, 철거 후 우리처럼 무허가로 굴양식한 사람에 대해 면허를 내준다고 하였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억 혹은 몇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런 비용을 모두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보조가

⁹⁾ 키는 5~20cm 정도이고 노란색 뿌리가 바닷가 모래 속 깊이 들어가며 둥그런 열매에는 긴 고랑이 패어 있다.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지만 뿌리를 한약의 재료로, 잎을 채소로 쓰기 위해 심기도 한다. 가을에 뿌리를 캐서 햇볕에 말린 것을 방풍(防風)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진해거담에 쓰고 있다. 야채로 쓰기 위해서는 10월에 햇빛을 피하여 잎을 새끼로 묶어두었다가 잎이 붉은색을 띨 때 따는 것이 좋다. 해방풍으로 부르기도 한다.

필요하다. 굴양식이 주민들의 생계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굴양식이 철거되고 나면 앞으로 2~3년 동안 생계에 대책이 없다. 신두리 1구, 2구, 3구와 의향2구 등 9개 부락이 굴양식을 하고 있고 163가구 정도가 된다. 무허가로 해서 철거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④ 생활안정자금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유류피해주민을 위한 장기 저리 생활안정자금도 필요하며, 환경오염이 안되는 기업 체를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어업이나 축산농가 등에 장기 무이자로 생활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 우리지역에 공장에 들어서면 일자리창출에는 좋겠지만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부품공장과 같은 환경오염이 적은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작은 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⑤ 심리적 지원 서비스 필요

- 유류피해주민들은 심리적 안정과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자신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심리적·정신적 불안 및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을 화합잔치나 주민들의 정서적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상담서비스, 웃음치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좋겠다.
- 유류피해가 있고 나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심하다. 서로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기도 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 심리 검사, 무료 건강검진, 심리적인 재활서비스기구 필요하다.
- 예전에는 일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졌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술도 많이 먹게 된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일찍 깬다. 과제를 받으면 겁부터 난다.

⑥ 의료서비스 필요

- 유류피해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순회 진료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진료는 전문적이지 못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대도시 종합병원에서 진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정부에서 치료를 해주러 오는데 약만 줄 뿐 종합적인 진료는 안 해준다. 진료 할 때 마다 각각 다른 병원에서 와서 해주는데 진료기구도 제대로 안 가져 오고, 진료도 간단히 해 준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싶다.
 - 유류피해주민들은 검진비나 수술비 할인 및 감면 등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을에 진료를 해주러 오는 병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한 사람의 의사가 내과, 외과, 피부과 등모든 과목을 다본다.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우리한테 찾아오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⑦ 여가지원서비스

- 연구 참여자들은 농한기를 이용한 문화 활동 지원의 필요성과 노인, 아동, 여성 등에 맞는 대상자별 맞춤식 여가지원서비스를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농한기, 어업의 비수기, 관광업 비수기 등을 이용한 주민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필요 하다.
 - 피해지역에 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찜질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노인회관을 이용한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이나 휴식장소가 필요하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엄마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⑧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

- 양질의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통학버스 의 증설, 대학생을 위한 융자서비스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이라서 보육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운행되고 있지 않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늦게 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스쿨버스나 통학버스가 필요하다.

- 우리지역에 국립대학의 유치하던지 혹은 대학의 분교를 유치해서, 외지에 대학을 보내는데 드는 학자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 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즉 장기저리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기업체,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직원채용시 지역 주민 할당제를 적용하여 지역인재가 취업될 수 있도록 기업에 건의하는 방법이 모색되 어야 한다. 피해주민 자녀가 지역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가산점제를 주면 좋겠다.
- 시골지역이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많다. 이들과 지역 아동들의 융합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 유류피해사고에 대한 복지서비스 유형화

1) 응답자 특성별 분포

- 본 연구에서는 Q분석을 위하여 총 28명의 P표본을 선정하였다. 즉, 피해주민 11명, 공무원 12명, 피해주민 및 공무원과 무관한(이하 "해당없음)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태안 14명, 서천 12명, 기타지역 2명으로 구성되었다.
- 분석결과는 QUA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앞서 영역별로 추출된 총 23개의 유류피 해 지원에 대한 진술문인 Q표본에 대하여 28명의 P표본이 실시한 Q분류과정을 통하여 산출되었다.

○ Q방법에 의한 분석결과 추출된 3개의 요인(이하 "유형"으로 함)에 따른 P표본의 특성별 구성 분포를 나타냈다.

〈표 6-2〉 응답자 지역별 분포

(단위:명, %)

구분	태안	서천	기타	계
피해주민	9(64.3)	2(16.7)		11(39.3)
공무원	4(28.6)	8(66.7)		12(42.8)
해당없음	1(7.1)	2(16.7)	2(100)	5(17.9)
계	14(100)	12(100)	2(100)	28(100)

2) 유형화

□ 유형별 특성

- 본 연구결과 3개 유형화가 도출되었다. <유형 I>은 총 12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고, 인자가중치 1이상은 주로 피해지역주민, 공무원 등 전반적인 응답자의 특성이 포함되 었다.
- <유형 II>는 총 7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고, 인자가중치 1이상은 주로 피해지역의 상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 <유형 Ⅲ>는 총 9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고, 인자가중치 1이상은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표 6-3〉P표본의 인자가중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인자가중치	 연령	성별	지역	직업	구분
11 0				, ,	, , ,	
	1.9925	66	남	태안	농어업	피해주민
	1.1702	36	남	서천	공무원	공무원
	1.1399	41	남	대전	교수	해당없음
	1.1041	56	남	태안	농어업	피해주민
	1.0387	59	남	태안	요식업	피해주민
유형 Į	1.0098	48	남	태안	공무원	공무원
(12명)	.9579	37	남	천안	회사원	해당없음
	.9022	38	남	서천	NGO	해당없음
	.8751	35	여	서천	NGO	해당없음
	.8690	47	남	서천	어업	피해주민
	.7535	55	남	서천	직장인(농협)	피해주민
	.6971	24	남	서천	공무원	공무원
	2.7830	66	व	태안	상업	피해주민
	2.3437	56	남	태안	상업	피해주민
	2.2332	33	여	태안	상업	피해주민
유형Ⅱ (7명)	1.7555	62	여	태안	상업	피해주민
(7.8)	1.4856	45	여	태안	공무원	공무원
	1.1733	65	남	태안	농어업	피해주민
	1.1101	50	남	태안	회사원	피해주민
	2.3447	39	여	서천	공무원	공무원
	1.7452	30	남	서천	공무원	공무원
	1.2553	23	여	서천	공무원	공무원
A 31-	1.2325	37	남	서천	공무원	공무원
유형Ⅲ (9명)	1.0449	40	남	서천	공무원	공무원
() 0)	1.0437	47	남	서천	공무원	공무원
	1.0089	61	남	태안	NGO	해당없음
	.8772	45	남	태안	공무원	공무원
	.7348	52	여	태안	공무원	공무원

〈표 6-4〉 유형별 응답자 분포

(단위:명. %)

구분	유형 I	유형Ⅱ	유형Ⅲ	계
피해주민	5(41.66)	6(85.71)	-	11(39.28)
공무원	3(25.00)	1(14.28)	8(88.88)	12(42.85)
해당없음	4(33.33)	-	1(11.11)	5(17.85)
계	12(100)	7(100)	9(100)	28(100)

 $\chi 2 = 17.159(p=0.002)$

○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 분석결과, <유형 I>은 피해주민, 공무원 및 기타 해당없음의 응답자들이 고루 분포하였다. 반면에 <유형 II>는 피해주민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고 있으며, <유형 III>은 공무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5〉 유형별 eigen값과 설명변량

구분	유형 I	유형Ⅱ	유형Ⅲ
Eigenvalues	12.83	3.39	2.00
변량 %	0.21	0.22	0.22
누적변량 %	0.21	0.43	0.65

- 전체 유형의 총 누적별량은 65%를 나타내었다.
- 유형별 상관분석 결과 <유형 I >과 <유형Ⅲ>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6-6〉 유형별 상관관계

구분	유형 I	유형Ⅱ	유형Ⅲ
유형 I 유형 Ⅱ 유형 Ⅲ	1.00	.495	.711
유형 Ⅱ		1.00	.425
유형 Ⅲ			1.00

〈표 6-7〉 각 유형별 진술항목 표준점수

유형Ⅲ (9명) 1.8 .7 7 6
1.8 .7 7
.7 7
7
6
4
1.8
2
.5
1.0
.3
.2
4
6
-1.2
-1.1
-1.3
1.6
.3
-2.0
0
7
1.3
1

□ 유형별 내용

○ Q분석결과에 대한 각 유형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정을 위해 각 유형의 상대적인 중 요도가 높은 진술문(표준점수 +1.0이상)과 낮은 진술문(표준점수 -1.0이하)을 중심으 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유형 I: 재정지원요구형

- <유형 I>은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긴급구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군관민네트워킹시스템이 필요하다"가 1.0이상으로 나타내었다.
- 반면에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교를 유치해야한 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 원이 필요하다" 등이 -1.0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나타났다.
- 특히 <유형 I >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와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하다",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가 다른 유형보다 강조되었다. 반면에 "대학교를 유치해야 한다"와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다른 유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 따라서 <유형 [>을 "재정지원요구형"으로 정의하였다

〈표 6-8a〉〈유형 Ⅰ〉의 항목별 표준점수 (±1.0을 기준으로 높은 것과 낮은 것)

Q-진술문	표준점수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 긴급구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군관민군네트워킹시스템이 필요하다. 	1.77 1.26 1.16 1.05
 ·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 ·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1.22 -1.49 -1.62 -2.09

〈표 6-8b〉 〈유형 Ⅰ〉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차이가 큰 항목

Q-진술문	유형 I	다른 유형	차이
 ·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하다. ·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1.258	048	1.306
	.868	396	1.263
	419	-1.469	1.050
·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	885	.337	-1.223
	-1.486	211	-1.274
	-1.621	217	-1.404

(2) 유형 II: 관광객유치지원요구형

- <유형 Ⅱ>은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피해주민자녀를 위한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가 1.0이상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

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등이 -1.0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나타났다.

〈표 6-9a〉〈유형 Ⅱ〉의 항목별 표준점수 (±1.0을 기준으로 높은 것과 낮은 것)

Q-진술문	표준점수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1.91
·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1.7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	1.33
·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1.30
·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1.35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1.82
·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2.09

- 특히 <유형 Ⅱ>"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 다른 유형보다 강조되었다. 반면에,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 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다른 유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 따라서 <유형 Ⅱ>을 "관광객유치지원요구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6-9b〉 〈유형 Ⅱ〉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차이가 큰 항목

Q-진술문	유형 I	다른 유형	차이
·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767	-1.338	2.105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	1.325	489	1.814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	.213	-1.134	1.347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30	.900	-1.030
·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하다.	676	.376	-1.052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1.824	766	-1.057
·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1.355	1.217	-2.572

(3) 유형 Ⅲ: 직업재활지원요구형

- <유형 Ⅲ>은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긴급구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군관민네트워킹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가 1.0이상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등이 -1.0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나타내었다.
- 특히 <유형 Ⅲ>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가 다른 유형보다 강조되었다. 반면에 "피해 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는 다른 유형보다 낮게 강조되었다.
- 따라서 <유형 Ⅲ>을 "직업재활지원요구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6-10a〉〈유형 Ⅲ〉의 항목별 표준점수 (±1.0을 기준으로 높은 것과 낮은 것)

Q-진술문	표준점수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1.82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1.77
· 긴급구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군관민네트워킹시스템이 필요하다.	1.55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28
•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1.04
┃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1.11
·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1.19
·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1.31
·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1.99

〈표 6-10b〉 〈유형 Ⅲ〉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차이가 큰 항목

Q-진술문	유형 I	다른 유형	차이
·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1.768	344	2.111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285	.193	1.092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	714	.531	-1.245
·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29	.946	-1.675

(4) 유형간 공통의견

- <표 6-11>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들이 기준 수준(±1.0)을 벗어나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문과는 달리, 세 가지 유형간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진술문을 나타내었다.
-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와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가 강조하였다.
- 반면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와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6-11〉 유형간 일치하는 진술문과 평균점수

Q-진술문	평균점수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1.83
·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1.32
·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1.28
·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2.05

○ <표 6-12>는 각 유형별 핵심의견을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 지관리기구의 필요성과 피해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군관민 네트워킹시스템을 통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6-12〉 각 유형별 핵심 의견

		유형별 표준점수			
Q-진술문	유형 I	유형 II	유형 Ⅲ	일치 의견	
	(12명)	(7명)	(9명)	의선	
1.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triangle \triangle$	ΔΔ	$\triangle \triangle$	
2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피해주민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피해주민자녀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			
7. 피해주민을 위한 정서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8.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9.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10. 피해주민을 위한 병원비 할인혜택이 필요하다.					
11. 피해주민자녀를 위한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12. 지역기업체의 지역주민 우선채용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3.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 한다.	•				
14.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		•	▼	
15.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			
16.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	•	•	
17. 긴급구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군관민네트워킹시스템이 필요하다.			ΔΔ	Δ	
18. 다양한 업종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9.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	•	•	▼▼	
20. 피해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		$\triangle \triangle$			
22.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3.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하다.					

3. 연구결과 요약

유류피해지역주민, 공무원, 관련단체실무자 등 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종합관리기구의 필요성,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생활안 정자금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요구, 심리적 재활서비스 필요성강조, 의료서비스필요성 강 조, 여가지원서비스 강조,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요구 등으로 나왔다. 이는 경제적 지원 및 의 료적 지원 서비스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교육복지적 욕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Q 진술문을 작성하여 28명의 대상자를 통해 응답을 받은 결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을 3가지 유형, 즉 재정지원요구형, 관광객유치지원요구형, 직업재활지원요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유형간에 공통적으로 높게 나온 진술문은 '피해주민에 대한 통합복지관리기구의 필요성'과 '피해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의 필요성'이었다. 반면에 공통적으로 낮게 나온 진술문은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의 필요성'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며, 피해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낮게 나온 이유는 피해보상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피해주민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의 필요성이 낮게 나온 이유는 피해주민이 고령화되어서 창업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제 7 장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략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방안

1) 지역인적자원의 개념

-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개념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 2조에 의하면 "인적자원이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체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 모든 가용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핵심역량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10)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경제적 재고, 사회적 응집력 제고 등을 통하여 궁극

¹⁰⁾ 시회적 신뢰, 규범, 정보체널 등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로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의 추상적 자산으로서 사람의 행위를 촉진하는 사람들간의 관계의 변화에 두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재교육, 문화 · 예술 등 여가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및 이의 총체적 지원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찬순, 2003)

2) 지역인적자원 개발체계의 모형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발전전략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계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회적 재충전 시스템,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 함양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찬순, 2003).

①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 초·중등교육에서부터 토론문화, 자기 주도적 학습, 문제해결능력 강화 등을 통해 학습능력을 배양한다. 지역대학 및 직업교육기관, 지방정부, 도서관, 박물관, 종교기관, 자원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역사회에 산재된 지식자원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키고, 디지털 인프라를 경유한 전 지역주민의 접속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학습망을 추진하다. 또한 실업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의 필요가 가장 높은 재훈련 및 평생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학습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학습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민관연구소, 각종 협회 등이 서로 협력하여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공존하는 지역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융합을 활성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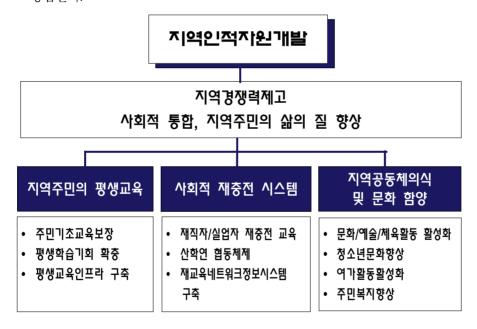
② 사회적 재충전(refill) 시스템 구축

- 기업, 대학, 정부, 민간기관 등이 제각기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합·연계한다. 경력전환, 신산업분야의 지식 재충전을 원하는 재직자나 실무중심 교육을 원하는 신규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하며, 교육주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자체단체는 이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직업훈련을 중점 추진하는 총괄 기구의 발족을 통한 직업교육의 전국적·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의 허브 및 정보교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민간이 주축이 되어 기술 및 직업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유기체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함양

- 지역주민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며, 감성과 미학적 능력, 문화 예술 활동, 전통문화 및 체육활동 등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며, 지 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정립한다.



〈그림 7-1〉지역인적자원개발 모형(자료: 박찬순. 2003)

3)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략

○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위의 모형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사회적 재충전 시스템,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함양 구축 등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1) 주민평생교육 구축

①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방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 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교육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교육 활성화 및 영재교육 강화,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의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표 7-1>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2007∼2011년)

사 업 명	목 적	내 용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개선으로 기초 과학교육 내실화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과학교실 및 과학 동아리 운영지원
영재교육 강화	영재판별도구 및 자료개발, 교원연수 지원으로 영재교육의 안정적 정착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영재 교육기관 및 대상자 활대, 다양한 영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분야의 다양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운영지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의 보호·교육을 통한 계층간·교육 안 전망 구축 및 교육 양극화 해소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다양화를 위한 지원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강화로 지식기반 사회 에 필요한 자율적·창의적 인재 양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성화	글로벌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영 어의사소통력 신장 여건 마련	지자체, 풀브라이트지원 원어민 모 집, 사전교육
고등학교직업교육 체제개편 및 내실화	운영체제의 특성화·다양화로 명 문 특성화고 육성, 학과 개편에 부 합되는 쾌적한 실습여건 개선	특성화고 지정, 학과개편, 실습여 건 개선,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 전문교육 진흥사업, 전문계 고교 운영 지원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 등보장 및 교육복지 확대 구현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운영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구현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석식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만3~5세 유아에게 교육 비를 지원하여 유아 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저소득층 만3~5세의 유아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지원
장애아 교육지원	장애아의 실질적인 무상교육 보장 과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 복지 증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지 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 치 등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지원	전문직 퇴직자의 교육자원 봉사활 동 지원을 통해 지역평생 교육전문 가로 활용,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	연간 150명 동원, 금빛평생교육봉 사단 운영비, 봉사활동 실시에 따 른 실비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와 예방 및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활 동 등
지역평생교육지원 센터 운영 지원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요구 충족,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종사자에 대한 연수, 정보의 수집·제공

〈표 7-1〉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2007~2011년)(계속)

사 업 명	목 적	내 용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재구축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교육비를 경감,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	사이버가정학습 평가문항 개발, 인터넷방송 동영상 모듈자료 개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콘텐츠 2종 개발 등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소규모학교를 인근 학교와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협력 운영 및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	다양한 교육과정 공동운영개발,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직원 공동수업연구, 학습지료 공유 등
농어촌지역 중심 학교 육성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학교군형 지역중심학교군, 독립형 지역중심학교, 특성화형지역중심학교 운영 등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2008

- ② 평생학습기회 제공의 다양성: 현재 지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문화원, 복지관, 여성회관, 경로당, 마을 단위의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태안군은 2006년 7월 평생학습도시¹¹⁾로 지정되어 소양, 건강/보건, 컴퓨터, 예능, 문예, 가정, 취미, 어학, 공예, 외국어,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76개의 강좌를 개설하는 실적을 올렸다. 기관별로는 군청, 교육청, 문화원, 복지관, 중학교, 초등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 서산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취업관련강좌의 개설, 즉 조리기능사, 컴 퓨터 OA Master, 도배기능사, 양장기능사, 요가지도자반 등이 개설되어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¹¹⁾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줄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과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지역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다.

- 홍성군은 평생학습교육센터를 통해 농업경영교실, 외국어, 자녀교육, 생활교양, 건 강, 생활체육, 문화교양, 재태크, 컴퓨터 교육 등을 온라인강좌로 개설하였다.
- 결국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온라인(on-line) 혹은 오프라인(off-line) 등 지역주민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개설함으로써, 대상자의 다양성을 높이는 맞춤형 학습기회의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지역 내 지식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내 지식 네트워크는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유류피해지역 주민의 직업재활과 훈련을 위해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재육성개발을 한다.
- (2) 사회적 재충전 시스템 구축
- ① 직업훈련: 지역사회 내 직업전환을 원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 ② 직업 정보제공: 지역사회 내 직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직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산·학·연 협동체제: 태안화력·공주대학교·태안교육청 사이의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멘토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면 대덕밸리에 산 재되어 있는 연구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지역특성에 맞는 총체적 종합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서는 전문분야의 고급인 력 수급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역 의 대학교와 수도권 대학 등 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특성화방안으로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④ 재교육네트워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 지역 내 대학교의 인적자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학교의 다양한 교수요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지역에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화상강의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다.
 - 분야별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지역사회인적자원개발(RHRD)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 다방면의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계획적인 프로그램수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RHRD사업에서 진행되었던 우수프로그램의 지역적 결합을 통해 인적자원발굴에 힘써야 한다.
 -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하여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 함양 구축
- ①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2008년 여름에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개최하였던 문화행사들이 일시적인 문화행사를 끝나기 것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해변가요제를 유류피해지역의 해수욕장에서 당분간 계속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유류피해와 관련하여 가칭 "환경가요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문화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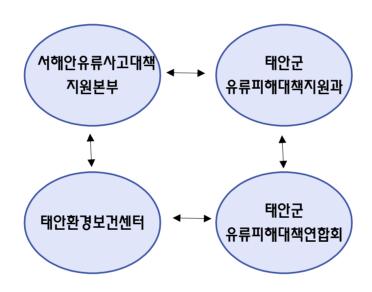
- 유류피해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국제 요트경기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리아시스식 해변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움 태안해변에서 요트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 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위상에 크게 공헌하게 만들 수 있다.
- ② 청소년 문화활동과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 청소년들이 문화를 체험하는 주요 공간은 지역사회청소년상담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를 태안지역에서 직 접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 체험장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대도시의 영화관, 공연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태안지역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화상으로 대도시 청소 년들의 문화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다.
 - 도시의 특정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③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노년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 지침, 요가, 각종 재활 활동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계속 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 프로그램과 명절 또는 기념일 중심 프로그램, 즉설날, 추석, 대보름, 한식, 단오, 크리스마스 등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상시 운영 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념일 중

심 프로그램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고유한 풍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2. 서해안유류피해대책 종합관리기구 구축 방안

1) 서해안유류피해대책관리기구 현황

현재 서해안 유류피해대책관리기구는 충청남도 도청산하의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태안군청 산하 유류피해대책지원과, 태안환경보건센터, 태안군유류피해대책연합회 등 4개의 관리기구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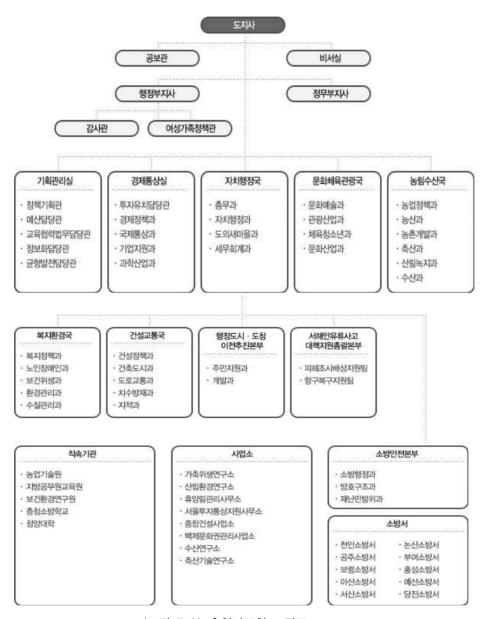


〈그림 7-2〉서해안 유류피해대책 관리기구

(1)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는 서해안유류사고에 대한 대책을 지원하기위해 충청남

도청 산하기관으로써, 서해안유류피해에 대한 지원기준과 범위를 선정하고, 배상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는 피해조사배상지원팀과 항구복구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도와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그림 7-3〉 충청남도청 조직도

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피해조사배상지원팀 항구복구지원팀

〈그림 7-4〉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조직도

-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업무
 - 피해조사배상지원팀
 - 지원총괄본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체계 구축
 - 본부, 팀 소관업무의 종합 조정 총괄
 - 국 내·외 유사사례 수집 및 분석, 대책 마련
 -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범위 선정
 - IOPC 기준에 맞는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 전문가(계약직) 그룹 및 시민단체 활동지원
 - 해양, 환경분야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총괄
 - 분야별 피해복구 및 배상 대책방안 연구 및 자문

- 사고 수습대책 방안 제시 및 대외적 배상 협상 대행
- 기타 전문가적 의견 제시 및 자문 상담

○ 항구복구지원팀

- 도 직속기관, 사업소 정기 종합검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감사
- 감사원 감사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기술, 공직기강, 민원분야 제 외)
- 감사원 대행 감사(기술분야 제외)
- 감사원 요구자료 작성 제출(기술분야 제외)
- 망실, 훼손, 변상 사고조사 처리
- 일상감사(물품구매, 용역)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회계검사
- 토지관리 및 지적분야 감사

(2) 태안군청 유류피해대책지원과

○ 태안군청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를 신설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중앙 및 도와의 협력을 지원하고, 유류피해 배상을 위한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림 7-5〉 태안군청 조직도

- □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주요업무
 - 총괄지원
 - 가.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및 총괄
 - 나. 피해복구를 위한 중앙-도와의 협력지원
 - 다. 전문가 그룹 및 시민단체 조사활동지원
 - 라. 인력, 장비수급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피해복구 지원
 - 배상지원 1
 - 가. 유류사고 비수산업 피해조사에 관한사항 지원

- 나. 피해보상을 위한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및 유사사례수집 지원
- 다.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 피해조사 및 배상에 관한사항 지원

○ 배상지원 2

- 가. 유류사고 수산업 피해조사에 관한사항 지원
- 나. 피해보상을 위한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및 유사사례수집 지원
- 다.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 피해조사 및 배상에 관한사항 지원

(3) 태안환경보건센터

- 태안환경보건센터는 2008년 9월 직원 6명으로 설립되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하기도 된 기구이다. 서해안유류사고 후 서해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원 유건강유해성분의 노출, 해양생태계의 파괴 등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및 사 후건강관리사업 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 주민 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 유류유출로 인한 건강영향연구,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연구, 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실시한다.
 - 해양기름유출로 인한 서해안지역 주민의 건강영향과 생활환경 영향, 생태계 피해에 대한 급성 및 중장기적인 영향을 평가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한다.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 급격한 산업화와 폭증하는 해상교통 및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황해연안지역 전체 의 환경보건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4) 태안군유류피해대책연합회

- 본 대책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설립되었으며, 수산 및 비 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이다.
- 본 대책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되며, 주민피해의 완전 배·보상을 위한 각종 대책위 원회의 연계 대응을 추진하다.
- 대책연합회의는 운영경비, 사업비 등 경비를 지역자체단체장으로 부터 보조받는다.

2) 현행 유류피해사고대책기구의 문제점

- 현행 유류피해사고대책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다. 경제적인 피해보상은 충남도청의「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와 태안군청「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있으며, 주민 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유류유출로 인한 건강영향연구 등 은「태안환경보건센터」가 있다. 또한 유류피해사고주민들 중심의 민간기구인「태 안군유류피해대책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 유류피해지역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과 기구가 없다. 피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부기관, 시민단체, 각 가정, 개인 등이 제각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전체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고통을 알리는 중요한 제3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 기구와 기구간 정보교환과 상호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중복행정이 발생하고, 필요 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주민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유류피해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기구(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대외기관이 피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 행정편의주의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기구와 기관의 특성과 업무내용을 파악한 후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한다. 즉 유류피해는 건강문제, 재산피해문제, 행정처리문제, 소송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각의 문제를 먼저 숙지한 후 기구에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경제적 피해보상과 의료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일관성과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와 직업재활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3) 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기구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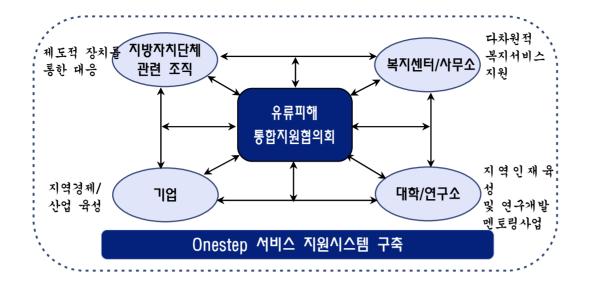
(1) 통합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유류피해관련 기구가 다양하게 산재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고, 일관 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장·단기정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는 일 관된 인식과 사명감을 가진 단일기구가 필요하다.
- 유류피해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정보창출, 대외활동, 주민의 민원청구,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주민들에 대한 접근통로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단일기구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대책기구는 경제적 보상을 위한 한시적인 역할에 불과하며, 정신적· 심리적 차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유류사고 이후의 지역사회의 변화, 특히 공 동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다차원적 복지지원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기구인 센터나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자료와 정보, 그리고 측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서해안 유류피해를 총괄적인 관점에서 보고,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단일 종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2) 종합적·통합적인 대책기구의 설립 방법

-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즉, 피해주민의 경제 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및 재활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피해지역인 6개 지역자치단체에 네트워크 조직체인 센터나 사무소를 설치하고 민관 이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한다.
- 본 관리 기구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재원조달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제시된 가해자의 보상범위에서 사용 하는 방안과 관련기업의 특수목적기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이 기구는 가칭 "유류피해통합지원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 이 기구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복지관, 지역주민, 기업, 대학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7-6〉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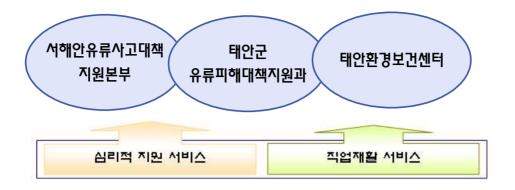
- (3) 통합대책관리기구 설립모형(안)
- ① 제 1안: 기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기구의 통합 후 확장(안)
 - 제 1안은 기존 기구를 통합한 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운영 중인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유류피해대책지원 과」,「환경보건센터」등을 통합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영역, 즉 "심리적지원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 심리적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담당한다.
 - 직업재활서비스는 지역사회 사설학원과 연계하여 위탁한다. 직업재활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 후 직업기술분야, 국제실무분야, 인문사회분야, 경영실무분야, 예능분야 등에 연계·후련하다.

<장점>

- 각 기관에서 그 동안 유류피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통합 후에서 구 성원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 각 기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특이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조직에 서 다양한 정책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기존 업무를 분석하면, 필요한 업무 또는 누락된 업무를 쉽게 발견할 있어 서, 추가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기가 쉽다.

<단점>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변형시켜서 조직을 구성해야 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기존 기관의 문제점과 관행이 새로운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 기구와 기관간의 정보교환이나 자료공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know-how, 결점 등을 다른 기구에 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
- 기구와 기관간의 업무 교환과 담당자간의 업무 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
- 기구와 기관간의 이해관계로 발생할 수 있다. 업무분장, 기구별 지위, 상관의 출신 기 구 등이 기구의 전체 협력과 단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림 7-7〉 제 1안 : 기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기구의 통합 후 확장(안)

- ② 제 2안: 서해안유류사고대책종합관리기구 설립(안)
 - 제 2안은 종합관리기구를 설립하고, 현재의 기구인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유류피해대책지원과」,「환경보건센터」가 그 기구의 부속기관으로 합류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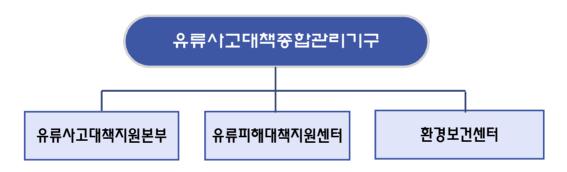
<장점>

- 종합관리기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종합관리기구를 국가차원(예, 총리실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다.
- 유류사고대책종합관리기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조직을 만들어 운 영할 수 있다.
- 현존의 기구들은 그대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관리기구의 설치로 인한 조직 내 불안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중복되는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서, 조직을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단점>

- 기존 기구들이 종합관리기구를 상부기관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직위에 또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는 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 기구와 기관 간에 자료제공과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협조되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 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추가된 업무를 맡을 부서를 정하는 것과, 중복된 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갈등이 존재 할 수 있다.



〈그림 7-8〉 제 2안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종합관리기구 설립(안)

3. 단계적・지속성장가능형 복지시스템 구축

1) 단기 효율적 복지시스템 구축

(1) 경제적 지원

- 단기적으로 지원 중 우선적으로 지원한 분야는 경제적 지원서비스이다. 피해주민을 위한 생계비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주거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 자립점포 임대 지원사업
 - 주거지원사업 :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주거 제공과 주거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의료지원

○ 유류유출로 인한 질병 및 부상 발생시 의료비 감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원범위는 1 인당 3회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한다.

(3) 교육지원

- 전국 월평균소득이하인 피해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에 대해 1년간 학용품 및 교재비 등 실비지원
 -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 1년간 학비지원

2) 중장기 전략적 복지시스템 구축

(1) 직업훈련 및 재활 지원 서비스

- 피해지역주민 및 자녀 중 직업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 직업적성검사 등을 통해 사설훈 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지원금액은 학원수강료, 실험실습비 등 1인당 총 1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훈련생에게 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2) 교육적 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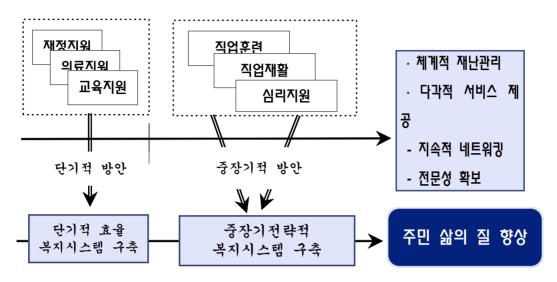
- 피해대상 자녀의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장기 저리 대부사 업을 실시한다.
- 전국월평균소득이하의 피해주민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한다.

(3) 심리적 지원 서비스

- 피해주민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위한 문화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전국월평균소득 이하의 피해주민에 대한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 지원비월 10만원 지원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을 위한 단계적 복지시스템은 단기적 방 악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단기적 방안은 재정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 방안은 직업훈련 및 교육, 심리적 지원등에 중점을 두어서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전문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여 한 한다.



〈그림 7-9〉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을 위한 단계적 복지시스템 구축

4. 차별적 인재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1) 영유아 지원시스템

- 전국월평균소득이하의 피해지역 주민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용을 지원한다.
- 피해지역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설로 유아교육과 보육기회를 확대한다.
- 전국월평균소득이하의 피해지역 주민 영유아에 대한 학습지 및 학습도우미 지원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2) 초, 중, 고등학생 지원시스템

- 초, 중,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방학 중 해외선진문화 체험 및 견학 및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 초, 중, 고등학교의 선진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노후교사 증·개축, 교실 대 수선, 냉·난방 개선, 화장실 개선, 외부 환경개선 등 선진 적 교육환경조성
 - 학교 내·외부의 공원화 사업 추진(학교 숲, 주민 쉼터, *환경교육장, 자연학습장, 생태연못조성 등 지원)
 - 환경교육장 조성(지역박물관 연계 환경오염과 극복사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활용 지도로 체험중심 환경교육 실천지도 및 예방교육강화지원)
- 피해 지역 학생지원 시스템 마련
 - 다양한 장학지원시스템 개발(피해지역 학생 및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자녀학생 특별 장학금 지원)
 - 정보화교육 및 지원
 - 피해 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초, 중, 고등학생의 지역인재육성발굴을 위해 방학 중 영재과학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 학교단위 영재교육기관 운영(교육과정과 연계한 재량, 특별활동)
- 영재교육 우수교원 확보
- 질 높은 영재교육개발(영재교육기관 평가, 담당교원 워크숍 개최, 네트워크 구축 등)
- 초, 중, 고등학생의 지역인재육성발굴을 위해 학기 중 및 방학 중 외국어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영어경시대회개최를 통한 지역우수인재발굴
 - 해외학교 자매결연 지원 및 교환학생지원
 - 피해지역 외국어 우수자 장학금 지원
 - 영어 전용교실 및 체험교실 설치확대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배치 및 활용
 - 권역별 영어 체험센터 설치 및 확대
 -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
-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을 강화한다.
 - 피해지역 소외계층지원 확대

- 피해지역 강사지원,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그램 강사 공동 활용
- 우수 강사 확보 및 질 관리
- 방과 후 영어학교운영(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및 사전연수)

3)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 전국월평균소득 이하의 피해주민 중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을 위해 총 2회 일정금 액의 학자금을 지원하다.
- 타지에서 교육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 대학생과 청년구직자를 위한 지역사회기업체에서의 인턴사원 연계 및 경비를 지원한다.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운영지원
 - 산학겸임교수 지원 강화
- 청년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훈련비용을 지원한다.
 - 월1회 이상 1년 이하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피해지역 대학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귀향 멘토링제에 참여할 경 우 이를 지원한다.

4) 피해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재활 지원시스템

-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육성
 - 피해지역의 특화사업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실시
 - 산학협력을 통한 피해자 위탁교육실시
 - 지역거점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재활교육 실시
- 피해이전의 직업을 특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교육 및 훈련실시
 - Local Food 사업지원(친환경로컬푸드순회장터사업, 친환경농산물 간식공급지원시스템마련, 친환경농산물 생산, 선별 및 소포장, 운송 등 고용창출지원
 - 1사 1촌 연계 사업지원
 - 녹색산업의 지역적용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지원 (지역의 향토자원을 명품화, 클러스터(Cluster)화,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구)
 - 국내 녹색산업 우수사례 탐방교육지원
 - 정신적인 의사소통, 갈등해소, 리더십 형성 훈련, 팀워크형성훈련지원

제 8 장 결론 및 제언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서해안유류피해사고는 피해지역의 산업,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어업종사자, 관광관련 종사자 등 피해지역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의료적 차원의 손실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해지역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인재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의 인재육성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재난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기존의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체계와 복지욕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복지서비스현황을 검토하여 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역에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셋째, 유류피해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 복지기관 현황, 교육기관 현황 등을 검토하여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유류피해사고지역 주민을 심층 면접하여 주민의 욕구에 대해 분석하고, Q방법에 의한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유형화를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 지역인재육성전략을 방안을 제시하고, 서해안유류피해대책종합관리기구안을 제안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별 지속성장 가능한 복지시스템과 차별화된 인재육성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1. 유류피해지역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류피해지역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유류피해지역 주민이 고령화되었다는 점이다. 유류피해지역인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주민의 인구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의 인구가 약 36.8%이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18.4%로 나타나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넘어섰으며, 일부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므로 유류피해지역주민들의 인구분포가 고령화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인재육성 방향을 모색하여야한다.

둘째, 유류피해지역주민들의 산업현황이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업 등이 전체 산업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관광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류피해지역의 지역특화사업이 바다를 테마로 한 관광산업이 많기 때문에 유류피해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셋째, 유류피해지역의 복지기관 현황에서 의료시설 중 의원급은 많은 편이나 병원급은 적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경로당이 대부분이며, 다른 여가복지시설은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는 기존 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한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좋을 것 같다.

넷째, 유류피해지역의 교육기관 현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학교가 없으며, 사설학원은 각 분야별로 분포되어 있다. 교육기관 중 대학교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유류피해지역주민의 면접 연구결과 분석

유류피해지역주민, 공무원, 관련단체실무자 등 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종합관리기구의 필요성,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생활안 정자금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요구, 심리적 재활서비스 필요성강조, 의료서비스필요성 강 조, 여가지원서비스 강조,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요구 등으로 나왔다. 이는 경제적 지원 및 의 료적 지원 서비스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교육복지적 욕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Q 진술문을 작성하여 28명의 대상자를 통해 응답을 받은 결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을 3가지 유형, 즉 재정지원요구형, 관광객유치지원요구형, 직업재활지원요 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유형간에 공통적으로 높게 나온 진술문은 '피해주민에 대한 통합복지관리기구의 필요성'과 '피해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의 필요성'이었다. 반면에 공통적으로 낮게 나온 진술문은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의 필요성'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며, 피해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낮게 나온 이유는 피해보상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피해주민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의 필요성이 낮게 나온 이유는 피해주민이 고령화되어서 창업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3. 지역인재육성 전략

지역인재육성 전략은 지역주민평생교육구축, 사회적 재충전 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의식 및 문화 함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주민평생교육구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교육재정계획, 즉 과학교육활성화, 영재교육강화,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저소득층 자녀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의 교육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자치

단체의 역할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온라인(on-line) 혹은 오프라인(off-line) 등 지역주민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개설함으로써, 대상자의 다양성을 높이는 맞춤형 학습기회의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재충전 시스템 구축은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정보제공, 태 안화력 등 기업체, 대학교, 지역자치단체 등의 협동체계를 구축해야함은 물론 연결허브기능을 충남도 인적자원개발센터(RHRD)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 함양 구축을 위해 유류피해지역 인근 해수욕장에 문화행사의 지속적 개최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바다와 육지의 생산품을 패키지화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수·축협간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자연자원의 우수성을 살리는 국제규모의 환경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4.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기구

제 1안은 기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기구의 통합 후 확장하는 안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유류피해대책지원과」,「환경보건센터」등을 통합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영역, 즉 "심리적 지원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제 2안은 종합관리기구를 설립하고, 현재의 기구인「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유류피해대책지원과」,「환경보건센터」가 그 기구의 부속기관으로 합류하는 방안이다.

5. 단계적·지속성장가능형 복지지원시스템

서해안유류피해사고대책을 위한 단계적 복지시스템은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단기적 방안은 재정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 방안은 직업훈련 및 교육, 심리적지원등에 중점을 두어서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전문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권희태(2007).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김성수(2007). 유류오렴 사고시 손해배상절차와 정부의 역할. 충남발전연구원 재난관리 연구소 김창섭(2007). 한국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구의 실태와 동향 분석.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동부·근로복지공단(2008).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당진군(2008), 2007 통계연보

류상일(2007).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박정현(2007).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박찬순(2003).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8). 2008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8).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8).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보령군(2008). 2007 통계연보

송두범(2008).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서산시(2008). 2007 통계연보

서천군(2008). 2007 통계연보

여성가족부(2008). 2008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오용준 외(2008). 피해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화성화 대상사업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이재은(2007).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여운철(2007).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위평량(2007).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전국재해구호협회(2006). 재난피해지역 주민의 재난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최종인(2007).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충청남도유류대책지원본부(2008). 생계안정자금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교육청(2008). 2007~2011 중기충남교육재정계획

태안군(2008). 2007 통계연보

홍성군(2008). 2007 통계연보

홍성군(2007).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

희망제작소재난관리연구소·한국정책포럼·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재민사랑본부·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태안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http://health.taean.go.kr/

태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taean.go.kr/

태안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lll.taean.go.kr/

통계청(2007).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당진사랑네트워크 카페 http://cafe350.daum.net/ c21

〈부 록〉

<부록 1> 『환경피해극복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전략 모색』심층 면접지

<부록 2> 서해안 인재육성을 통한 희망찾기 및 지역공동체 복원 연구에 대한 Q 진술문

<부록 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부록 4>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피해극복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전략 모색』 심층 면접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진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하고자합니다. 응답하여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최 진 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 희 숙 연락처: 017 417 7478, heeakang@kongju.ac.kr

- 1.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구 혹은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 2. 위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 3.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들이 어업에 복귀하기 까지 다른 경제 적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 1)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2) 소규모 창업을 위한 지원금 융자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 3)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 4.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 5. 피해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6.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 7. 피해주민들의 가족을 위해 복지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 1) 피해주민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해 콘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2) 피해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가, 체육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일정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8. 피해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 1)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 대학생들을 위한 대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3) 타 지역 유학하는 대학생 중 성적우수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생활안 정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4)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캠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성명 :

2) 거주지 :

3) 연령 :

4) 직 업:

<부록 2>

서해안 인재육성을 통한 희망찾기 및 지역공동체 복원 연구에 대한 **O 진술문**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관리기구가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통합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재정지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자녀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상황을 고려한 복지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정서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 상해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병원비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자녀를 위한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기업체의 지역주민 우선채용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 과고)를 유치해야한다
- 대학교를 유치해야한다
-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피해주민자녀의 생활비지원이 필요하다
- 피해유발기업의 피해보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긴급구호에 투입될 수 있는 군관민네트워킹 시스템이 필요하다
- 다양한 업종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27>
 -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 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

-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 다.
-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 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2.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 4.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용
- 6.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 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 8.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
- 9.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

- 10.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
- 11.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 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⑦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 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 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 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 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4.27>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①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 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 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심의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 가. 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 나. 법률·의료·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 마. 산학협력 활성화
- 바. 군 인적자원개발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 아.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 자. 지역인적자원개발
- 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 7.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 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③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⑤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⑧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⑨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 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 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 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 2. 부처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 3.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4.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
-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의 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 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사·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 정할 수 있다.
-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 ①정부는 인적 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 ②정부는 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정보 등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3. 정보 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개정 2007.4.27>) ①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 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의 지원
-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 정·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원
-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4.27>
-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07.4.27, 2008.2.29>
 -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부칙 <제6713호, 2002.8.26>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세워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928호, 200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389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제7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집필자■

연구책임· 최진하 환경부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공동연구・ 강희숙 공주대학교 교수

이진헌 공주대학교 교수

이도희 한밭대학교 교수

임명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전임책임연구원

이준건 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

연구보조 · 이경용 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 · 갈등관리 충남 포럼

RHRD연구보고서 2008 -01 · 서해안 인재육성을 통한 희망찾기 및 지역 공동체 복원

글쓴이·최진하, 최병학 외 / 발행자·김용웅 / 발행처·충남발전연구원 인쇄·2009년 2월 27일 / 발행·2009년 2월 27일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 (314-140) 전화·041-840-1231(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팩스·041-840-1229 ISBN·978-89-6124-079-6 03350

http://www.cdi.re.kr

ⓒ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